

표지면지

2013년 제4차 고령사회포럼

진행순서

13:30 ~ 14:00	등록
14:00 ~ 15:00	<p>주제발표</p> <p>좌장 :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p> <p>주제 :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p> <p>발표1 :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장)</p> <p>발표2 :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 - 김주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p>
15:00 ~ 15:50	<p>지정토론</p> <p>김상욱 (성균관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이명진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p> <p>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p> <p>한주형 (퓨처모자이크연구소장)</p>
15:50 ~ 16:00	종합토론 및 폐회



목 차

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1
2.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 51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
전화조사결과를 중심으로

정경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 고령사회연구센터장

제1절 들어가는말

급격한 고령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서는 노인을 정책대상자로 하는 노년복지적 접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우리사회에 자리잡고 있다(이상식 외, 2010; 정경희, 2004). 즉 고령화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각적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정책의 변화만으로는 적절히 대응할 수 없으므로 근본적인 정책패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지속되었고(김옥, 2002; 정경희 2001; 정경희 외, 2006a), 기본적으로 지향해야 할 정책 패러다임으로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이 논의 되고 있다(이상철 외, 2011; 정경희 외, 2006b; 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 WHO,2007). 정책 패러다임으로서의 연령통합의 주요 특징은 연령이 진입장벽이 되지 않고 상이한 연령층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사회의 연령통합성은 그 사회의 유연성과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는가로 평가될 수 있다(Riley & Riley, 2000). 연령통합적 사회와 대척점에 있는 연령분절적인 사회는 특정 사회적 역할로의 진입과 퇴장, 수행여부가 연령에 의하여 결정되며 다양한 연령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연령분절적 사회와 연령통합적 사회가 이분법적인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도의 문제로 파악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사회의 연령통합성 정도에 대한 경험적인 진단이 필요하다 하겠다. 향후 우리사회의 연령통합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고령화와 관련한 정책패러다임의 변화에 관한 논의가 담론수준에 머물고 있고(정경희 2004; Riley & Riley, 2000; Uhlenberg, 2000) 경험적인 기반은 부족한 상황이다. 현재 관련된 경험적 연구로는 우리사회의 노년기의 연령규범(이금룡, 2005; 정기혜 외, 2012; 송기민, 최호영, 2010)이나 노인에 대한 다양한 인구집단의 태도(김옥, 2011; 원영희, 2004; 최성재, 2009; 한정란, 2003)를 파악하는 연구들이 대표적인 것이다. 한편으로는 고령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지표의 개발이나 정책방안 모색(이상철 외, 2011; 정경희 외 2006b)이나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의 역할에 관한 연구(이금룡, 2004; 한정란, 2002)가 진행되고 있다.

한편, 고령친화성과 관련해서는 서울시와 같이 지역별로 고령친화성을 높이려

는 지자체 단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이상철 외, 2011),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의 출발점을 제공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WHO가 활동적인 노화(active Ageing)를 촉진하는 포괄적(inclusive)이며 접근가능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8영역의 84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를 통하여 고령친화적인 물리적·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구축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의 수준을 파악하고 정책적 우선순위를 설정해볼 수 있는 근거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연령통합성과 고령친화성에 대한 전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화조사의 한계상 많은 내용을 포함할 수는 없어 선행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제한된 항목 속에서 포괄적인 자료 산출이 가능하도록 설문지를 개발하였다.

제2절 조사개요

1. 조사개요 및 표본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을 파악하기 위한 전화조사가 2013년 10월 18일~10월 24일 기간 중 실시되었다. 전화조사는 30대~70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는 결혼 후 가족에 대한 부양부담이 구체화되기 시작한다는 점에서 볼 때 평균 결혼연령이 남자 32.1세 여자 29.4세인 점을 감안하였고 80세 이상은 사회적 접촉이 급감하고 전화조사에 응답하기 어려운 현실도 감안한 것이다.

본 조사의 표본추출틀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와 “주민등록인구통계(2013년)”로, 2013년 9월 주민등록인구통계를 표집틀로 사용하여 표본할당을 하였다. 표본은 전국 16개 시도별 인구수 현황을 파악하는 1단계, 비율을 파악한 2단계, 모집단의 지역, 성, 연령별 표본수를 계산한 3단계의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지역별 인구수와 표본의 지역, 성, 연령별 분포는 <표2>와 <표3>과 같다.

〈표 1〉 조사개요

조사 대상	만 30세 이상 ~ 80세 미만 일반국민
조사지역	16개 시도별
표본수	총 1,000명
표본추출틀	주민등록인구통계 9월 기준
표본추출방법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RDD 전화조사(CATI)
조사 기간	2012년 10월 18일 ~ 10월 24일
신뢰수준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오차 ±3.1%p
조사 기관	(주)현대리서치연구소

〈표 2〉 전국 16개 시도별 연령군·성별 인구수 분포

지역	전체			30대		4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6,569,155	3,226,461	3,342,694	906,735	889,052	870,110	865,179
부산	2,334,215	1,139,034	1,195,181	268,766	258,921	288,016	293,183
대구	1,586,789	768,193	818,596	186,554	189,227	221,781	227,597
인천	1,779,560	891,569	887,991	241,640	229,416	261,912	256,323
광주	878,054	428,367	449,687	119,596	119,749	127,682	127,807
대전	930,761	458,995	471,766	125,219	124,975	133,950	133,589
울산	709,731	359,457	350,274	95,847	90,507	109,601	107,259
경기	7,496,513	3,755,935	3,740,578	1,043,424	1,021,925	1,154,240	1,102,953
강원	992,298	493,809	498,489	106,620	100,503	131,096	120,135
충북	984,917	492,347	492,570	119,490	111,576	134,727	125,440
충남	1,353,597	685,958	667,639	174,306	153,896	183,069	159,805
전북	1,180,961	585,019	595,942	132,586	122,753	156,168	142,368
전남	1,228,100	614,991	613,109	127,882	112,246	161,756	136,183
경북	1,749,617	868,667	880,950	195,814	179,231	226,910	206,277
경남	2,097,408	1,042,528	1,054,880	262,213	245,522	295,850	277,547
제주	360,234	180,236	179,998	43,960	41,617	54,291	49,799
전 국	32,231,9101	15,991,566	16,240,344	4,150,652	3,991,116	4,511,159	4,331,444

6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지역	50대		60대		70대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768,081	816,901	441,321	480,624	240,214	290,938
부산	306,922	324,714	180,515	193,547	94,815	124,816
대구	197,660	203,152	103,427	116,258	58,771	82,362
인천	230,308	220,577	103,459	105,896	54,250	75,779
광주	98,277	102,015	52,858	58,826	29,954	41,290
대전	114,471	114,526	55,165	57,695	30,190	40,981
울산	95,576	89,155	40,863	39,170	17,570	24,183
경기	907,447	853,352	409,472	437,832	241,352	324,516
강원	131,627	127,838	71,392	78,474	53,074	71,539
충북	125,387	119,700	65,296	69,395	47,447	66,459
충남	162,727	153,098	93,779	100,200	72,077	100,640
전북	143,334	140,087	89,162	96,836	63,769	93,898
전남	149,837	139,828	99,148	107,642	76,368	117,210
경북	220,810	214,964	130,982	142,149	94,151	138,329
경남	264,532	254,561	136,835	147,592	83,098	129,658
제주	42,660	41,077	24,012	25,533	15,313	21,972
전 국	3,959,656	3,915,545	2,097,686	2,257,669	1,272,413	1,744,570

〈표 3〉 표본의 지역, 성, 연령별 분포

지역	전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서울	204	100	104	28	28	27	27	24	25	14	15	7	9	
부산	73	36	37	8	8	9	9	10	10	6	6	3	4	
대구	50	24	26	6	6	7	7	6	6	3	4	2	3	
인천	55	28	27	8	7	8	8	7	7	3	3	2	2	
광주	28	14	14	4	4	4	4	3	3	2	2	1	1	
대전	30	15	15	4	4	4	4	4	4	2	2	1	1	
울산	22	11	11	3	3	3	3	3	3	1	1	1	1	
경기	232	116	116	32	32	36	34	28	26	13	14	7	10	
강원	30	15	15	3	3	4	4	4	4	2	2	2	2	
충북	30	15	15	4	3	4	4	4	4	2	2	1	2	
충남	42	21	21	5	5	6	5	5	5	3	3	2	3	
전북	36	18	18	4	4	5	4	4	4	3	3	2	3	
전남	37	19	18	4	3	5	4	5	4	3	3	2	4	
경북	54	27	27	6	6	7	6	7	7	4	4	3	4	
경남	66	32	34	8	8	9	9	8	8	4	5	3	4	
제주	11	5	6	1	1	2	2	1	1	1	1	0	1	
전 국	1,000	496	504	128	125	140	134	123	121	66	70	39	54	

기존 전화조사의 경우, 가구 내의 유선전화를 두지 않고 휴대전화만 사용하거나, 유선전화를 사용하더라도 114 DB에 등재되지 않은 가구는 전화조사에서 체계적으로 제외되어 왔다. 특히, 등재가구와 미등재가구 간 가구 구성원에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 조사 결과의 편향성이 우려된다. 가구주의 학력이 높거나 소득이 높은 가구가 표집틀에서 제외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화번호부(114 DB)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을 대표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유선 전화번호를 RDD(Random Dight Dialing)를 통해 생성하였고, 이러한 RDD전화번호를 통해 모든 유선전화 가구를 표집틀로 포함하게 되어, 기존 114DB에 비해 표집틀의 Coverage가 확대되었다.

무분별한 표본대체를 방지하기 위해 원표본과 대체표본을 구분하여 사용하고, 원표본 조사 실패 사례 발생시 조사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2회 이상 추가 컨택을 시도하였다. 평일 조사시 상대적으로 주부의 응답비율이 높고, 화이트칼라 응답 비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말조사를 우선실시하고 불가피하게 주말조사를 수행할 경우, 30~40대 직장인의 유효표본 확보를 위해 야간조사(18시~21시)를 실시함으로써 표본설계에 맞춘 조사가 가능하였다.

2. 조사내용

조사표의 구성은 <표4>와 같다. 우리사회의 연령기준에 관한 설문과 부양의무에 대한 설문을 통하여 우리사회의 연령기준과 부모와 자녀에 관한 부양규범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로는 노인에 대하여 갖고 있는 이미지에 관한 3개의 질문을 실시하여 노인에 대한 스테레오 타입의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우리사회의 노년기의 연령규범을 파악하기 위한 4개의 질문을 하였다.

다음으로는 우리사회의 연령 차별과 갈등 정도에 대한 평가와 비노인층의 노인과의 접촉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질문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사회의 고령친화성 제고와 관련된 정책과제에 관한 질문이 실시되었다. 이외에도 응답자의 개인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8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4〉 조사내용

분류	내용
우리사회의 연령기준	노인의 기준연령
	일반적인 은퇴연령
우리사회의 노부모 및 자녀에 대한 부양의식	일반적으로 자녀가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
노인에 대한 이미지	노인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노인은 젊은 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년기의 연령규범	70대 노인이 재혼하는 것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
연령차별과 세대갈등	70대 노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 등의 정도
	우리사회에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 유무
노인과의 접촉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 발생 원인
	평소 인사를 하고 지내는 노인 유무
	최근 1달간 가족 외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눈 경험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한다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고령화 정책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
	노년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한 우선적 노력
응답자의 제특성	노년기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한 우선적 노력
	지역
	성별
	연령
	결혼상태
	가구형태
	직업
월평균소득	

제3절 조사결과

1. 응답자의 제특성

응답자 1,000명중 광역시 거주자가 46.2%, 도지역 거주자가 5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성이 49.6% 여성이 50.4%이다. 연령은 30대가 25.3%, 40대 27.4%, 50대가 24.4%, 60대가 13.6%, 70대가 9.3%이다. 결혼상태는 유배우자가 가장 많아 78.2%이며 거주형태별로는 자녀독거가구가 67.7%이다.

직업의 경우 41.0%가 화이트 칼라이며, 자영업이 24.5%, 기타가 15.6%, 무직이 18.9%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화이트 칼라는 전문·자유직(9.0%), 경영·관리직(2.3%), 사무·기술직(29.7%)을 포함하고 있다. 기타직업에는 판매·영업·서비스직(8.5%), 기능·작업직(3.5%), 농업·임업·어업·축산업(3.0%)와 기타(0.6%)가 포함되어 있다. 월평균소득은 100만원 단위별로 파악하였는데,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12.4%이며, 100만원대가 17.7%, 200만원대가 22.4%, 300만원대가 16.4%, 400만원대 14.1%, 500만원 이상이 17.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자의 특성을 연령군별로 나누어보면 연령대별로 결혼상태, 가구형태 및 경제활동, 월가구소득의 수준 등에 있어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30대는 미혼이 48.6% 유배우가 51.4%의 구성을 보이고 있지만 40대와 50대에게서는 유배우가 다수로 90%대를 보이고 있고 60대부터는 미혼은 전혀 없다.

가구형태별로는 30대는 자녀동거 비율이 74.6%이며 1인가구도 14.3%에 달하고 있는 반면 60대에 가면 자녀와 동거하지 않는 60대 응답자가 혼자 또는 배우자와만 생활하는 단독가구의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70대의 경우 동 비율이 80%대에 달하고 있다.

직업의 경우 30대는 화이트 칼라가 대다수를, 50대에 가면 자영업이, 60대 이상에서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 않는 비율이 제일 높다. 월평균소득의 경우도 30대에서는 200만원대가 높고 40대와 50대에 있어서는 소득군별로 비교적 균등한 분포를 보이고 있지만 60대에서는 양 극단의 소득군의 비율이 높고, 70대에서는 100만원 이하가 6.4%에 달하고 있다.

10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5〉 우리사회의 연령통합과 고령친화성에 관한 전화조사 응답자의 제특성

구분	사례수	비율
전체	1,000	100.0
지역		
광역시	462	46.2
도	538	53.8
성별		
남성	496	49.6
여성	504	50.4
연령		
30대	253	25.3
40대	274	27.4
50대	244	24.4
60대	136	13.6
70대	93	9.3
결혼상태		
미혼	150	15.0
유배우	782	78.2
이혼, 별거, 사별	68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71	67.7
부부가구	221	22.3
1인가구	99	10.0
직업		
화이트칼라	410	41.0
자영업	245	24.5
기타 직업	156	15.6
무직	189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21	12.4
100-200만원 미만	173	17.7
200-300만원 미만	219	22.4
300-400만원 미만	160	16.4
400-500만원 미만	138	14.1
500만원 이상	166	17.0

〈표 6〉 연령군별 제특성

(단위: %, 명)

구분	전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결혼상태						
미혼	15.0	48.6	8.0	2.0	0.0	0.0
유배우	78.2	51.4	90.5	94.3	84.6	63.4
이혼, 별거, 사별	6.8	0.0	1.5	3.7	15.4	36.6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7.7	74.6	88.5	69.2	43.4	20.4
부부가구	22.3	11.1	6.3	26.3	47.8	51.6
1인가구	10.0	14.3	5.2	4.6	8.8	28.0
직업						
화이트칼라	41.0	72.7	49.3	29.5	11.8	3.2
자영업	24.5	12.3	29.6	36.9	27.2	6.5
기타 직업	15.6	10.3	14.6	17.6	17.6	24.7
무직	18.9	4.7	6.6	16.0	43.4	65.6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2.4	0.8	2.2	8.9	26.9	61.5
100-200만원 미만	17.7	18.1	13.4	14.9	28.4	20.9
200-300만원 미만	22.4	30.2	21.9	21.7	17.2	12.1
300-400만원 미만	16.4	18.5	22.7	16.6	9.0	2.2
400-500만원 미만	14.1	15.7	18.2	17.9	4.5	2.2
500만원 이상	17.0	16.5	21.6	20.0	14.2	1.1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명)	(1,000)	(253)	(274)	(244)	(136)	(93)

2. 연령기준에 대한 인식

한 사회의 연령통합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사회화된 역할의 진입과 퇴출, 일정 삶의 단계를 규정하는 연령기준이다. 우리사회에서의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에 대한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연령은 70~74세로 53.0%에 달하며 다음이 65~69세로 28.1%이다. 반면 60~64세라는 응답도 8.8%이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2.7%이다. 통상적으로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많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대상이 65세 이상이라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높은 연령 기준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광역시 거주자가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아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62.5%로 도지역의 58.5%보다 높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광역시가 3.7%로 도지역의 1.9%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에게서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63.1%로 여자의 57.8%보다 훨씬 높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70세 이상이라는 응답이 30대는 54.2%, 40대는 62.3%, 50대는 59.0%, 60대는 61.8%, 70대는 74.2%이다. 즉 정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을 높게 보는 경향이 있으며 특히 70대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율도 70대는 5.4%로 다른 연령군에 비하여 매우 높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에 비하여 기혼자에게서 비교적 높은 연령기준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가구형태별로는 자녀가구의 경우가 70세 미만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

직업별로는 무직인 경우 70대 이상이라는 응답이 높는데, 이는 연령이 높은 경우 무직인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월평균소득별로 비교해보면 500만원 이상인 경우가 노인으로 보는 연령기준이 높은 편이고 100만원 이하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율이 7.4%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70대 층의 소득수준이 낮은 것과 연관되어 있어 보인다.

〈표 7〉 응답자 특성별 노인 기준연령 인식

(단위: %, 명)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나이와 상관없다	계 (명)
전체	8.8	28.1	53.0	4.6	2.8	2.7	100.0 (1,000)
지역							
광역시	8.0	25.8	55.6	4.1	2.8	3.7	100.0 (462)
도	9.5	30.1	50.7	5.0	2.8	1.9	100.0 (538)
성별							
남성	7.5	26.4	54.2	6.3	2.6	3.0	100.0 (496)
여성	10.1	29.8	51.8	3.0	3.0	2.4	100.0 (504)
연령							
30대	12.6	31.2	48.6	3.6	2.0	2.0	100.0 (253)
40대	9.1	27.0	52.6	6.9	2.6	1.8	100.0 (274)
50대	7.4	30.7	52.0	3.7	3.3	2.9	100.0 (244)
60대	7.4	27.2	57.4	0.7	3.7	3.7	100.0 (136)
70대	3.2	17.2	62.4	8.6	3.2	5.4	100.0 (93)
결혼상태							
미혼	16.7	26.7	46.0	5.3	3.3	2.0	100.0 (150)
유배우	7.3	28.6	54.6	4.1	2.7	2.7	100.0 (782)
이혼, 별거, 사별	8.8	25.0	50.0	8.8	2.9	4.4	100.0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9.1	29.5	53.4	3.9	2.1	2.1	100.0 (671)
부부가구	5.9	28.5	55.2	4.1	3.2	3.2	100.0 (221)
1인가구	14.1	17.2	49.5	8.1	6.1	5.1	100.0 (99)
직업							
화이트칼라	9.8	28.0	52.0	5.4	2.7	2.2	100.0 (410)
자영업	10.2	29.4	50.6	4.9	2.0	2.9	100.0 (245)
기타 직업	7.1	27.6	53.8	4.5	5.1	1.9	100.0 (156)
무직	6.3	27.0	57.7	2.6	2.1	4.2	100.0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8.3	26.4	54.5	3.3	0.0	7.4	100.0 (121)
100-200만원 미만	10.4	39.3	42.2	4.6	2.9	0.6	100.0 (173)
200-300만원 미만	11.9	22.8	57.1	4.1	1.4	2.7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5.0	29.4	58.1	4.4	1.3	1.9	100.0 (160)
400-500만원 미만	8.0	26.1	52.2	7.2	5.8	0.7	100.0 (138)
500만원 이상	8.4	25.9	56.0	4.2	1.8	3.6	100.0 (166)

한편 은퇴연령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65~69세가 46.5%로 가장 높고 다음이 60~64세로 30.7%이다. 앞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과 연계하여 보면, 70세 이전까지는 일을 하고 70대 이후에 퇴직 한 삶을 영위하는 것을 노년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은퇴연령 역시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이 8.1%로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에 대하여 나이와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인 2.7%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광역시에 비하여 도지역에서 은퇴연령을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64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34.4%로 도지역의 26.4%보다 높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의 경우 64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아 32.7%이다. 이러한 지역 및 성별 차이는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은퇴연령을 높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나이와 상관없다고 응답한 비율도 연령이 높을수록 높아서 70대의 경우 12.9%에 달하고 있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에게서 6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높고 이혼·별거·사별인 경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이 가장 높다. 한편 가구형태별 차이는 거의 없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화이트 칼라나 자영업자에게서 65세 미만이라는 응답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65세 이상을 은퇴연령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

이러한 은퇴연령의 노인의 기준연령과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나이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진 응답자의 48.1%는 은퇴도 나이와 상관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 65~69세라는 사회적 통념으로 받아들여져 왔던 연령기준을 갖고 있는 응답자의 51.2%는 34.5%가 60~64세, 51.2%가 65~69세군을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다. 또한 70~74세 군을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으로 응답한 응답자는 약 90%대가 74세 이하를 은퇴연령으로 보고 있고, 75~79세로 응답한 경우 또한 이러한 현상은 유사하다. 이는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까지는 은퇴를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즉 은퇴를 노인과 비노인을 구분하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는 경향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기준을 갖고 있더라도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있음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표 8〉 응답자 특성별 일반적인 은퇴연령 인식

(단위: %, 명)

구분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나이와 상관없다	계 (명)
전체	30.7	46.5	12.8	1.1	0.8	8.1	100.0 (1,000)
지역							
광역시	26.4	48.1	15.2	0.6	1.1	8.7	100.0 (462)
도	34.4	45.2	10.8	1.5	0.6	7.6	100.0 (538)
성별							
남성	28.6	45.4	16.7	0.8	0.8	7.7	100.0 (496)
여성	32.7	47.6	8.9	1.4	0.8	8.5	100.0 (504)
연령							
30대	28.1	49.4	14.6	0.4	0.8	6.7	100.0 (253)
40대	33.2	46.4	10.6	0.4	1.1	8.4	100.0 (274)
50대	33.2	47.5	11.5	1.6	0.4	5.7	100.0 (244)
60대	28.7	44.9	13.2	0.7	1.5	11.0	100.0 (136)
70대	26.9	38.7	17.2	4.3	0.0	12.9	100.0 (93)
결혼상태							
미혼	34.0	42.7	15.3	0.7	1.3	6.0	100.0 (150)
유배우	30.3	47.4	12.5	0.9	0.6	8.2	100.0 (782)
이혼, 별거, 사별	27.9	44.1	10.3	4.4	1.5	11.8	100.0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30.7	49.0	11.3	0.3	0.7	7.9	100.0 (671)
부부가구	30.8	42.1	16.3	2.3	0.0	8.6	100.0 (221)
1인가구	30.3	40.4	13.1	4.0	3.0	9.1	100.0 (99)
직업							
화이트칼라	32.9	45.6	13.7	0.5	1.2	6.1	100.0 (410)
자영업	30.2	48.2	12.2	0.8	0.8	7.8	100.0 (245)
기타 직업	28.2	44.9	17.3	1.9	0.0	7.7	100.0 (156)
무직	28.6	47.6	7.9	2.1	0.5	13.2	100.0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6.4	43.0	10.7	4.1	0.8	14.9	100.0 (121)
100-200만원 미만	30.6	48.0	11.6	1.7	1.2	6.9	100.0 (173)
200-300만원 미만	30.6	49.3	12.8	0.5	0.0	6.8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28.1	48.1	13.8	0.0	0.0	10.0	100.0 (160)
400-500만원 미만	34.8	48.6	10.1	0.0	2.2	4.3	100.0 (138)
500만원 이상	33.1	43.4	15.7	1.2	1.2	5.4	100.0 (166)

〈표 9〉 노인 기준연령과 은퇴연령

은퇴연령 노인 기준연령	60-64세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나이와 상관없다	계 (명)
전체	30.7	46.5	12.8	1.1	0.8	8.1	100.0 (1,000)
60-64세	54.5	28.4	6.8	2.3	0.0	8.0	100.0 (88)
65-69세	34.5	51.2	7.1	0.4	0.0	6.8	100.0 (281)
70-74세	26.8	49.8	14.5	0.9	0.8	7.2	100.0 (530)
75-79세	23.9	39.1	28.3	2.2	2.2	4.3	100.0 (46)
80세 이상	14.3	32.1	32.1	3.6	10.7	7.1	100.0 (28)
나이와 상관없다	18.5	18.5	11.1	3.7	0.0	48.1	100.0 (27)

3. 부양의식

가족구조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부양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특히 평균수명이 증가하고 청년층의 경제적 독립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자신의 노후준비와 함께 노부모 부양 및 자녀 부양의 중복부담을 경험하는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노년기 진입을 앞두고 있는 베이비 부머 세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본 조사에 의하면 노부모에 대한 부양과 관련하여 50.1%는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23.3%는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7%는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약 80%는 자녀가 노부모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기본적인 의무감을 갖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나머지 20%는 노부모의 경제적 안정은 자녀의 책임은 없다고 보고 있는데, 이는 노부모 본인이나 공적 연금 등 국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것일 수 있다.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로는 광역시에서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이 도지역에서는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성별로는 남자에 비하여 여자에게서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녀의 의

무라는 응답이 높은 편이다.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50대 이상에게서 자녀의 책임이 전혀 없다는 응답이 20%를 넘고 있다. 반면 30대와 40대에게서는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높는데 이는 이들 미혼이 연령대가 낮은편인 것과 유사한 맥락으로 보인다. 자녀동거가구인 경우에도 경제적 부양이 자녀의 책임은 아니라는 응답이 20.3%에 달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해서는 화이트 칼라의 경우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응답이 28.8%로 높은 편이다. 또한 소득수준의 경우 자녀의 책임이 없다는 응답율과는 U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서는 학업을 마칠 때 까지라는 응답이 가장 높아 33.7%이며 다음이 결혼할 때까지로 26.9%이며, 직장이 생길 때까지가 20.1%이다. 성년이 되는 20세까지라는 응답은 15.0%이다.

지역별로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도지역에서 높고, 광역시에서는 학업을 마칠 때까지라는 응답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여자에 비하여 높다.

연령군별로는 30대의 경우 성년이 되는 20세까지라는 응답이 30.4%로 타 연령에 비하여 월등히 높다.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직장이 생길 때까지와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아 자녀에 대한 부양의 기간을 실질적인 경제적 독립이 가능할 때까지로 생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결혼상태별로 보면 미혼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율이 높고 이혼·별거·사별의 경우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다. 가구형태별로는 1인가구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율이 높고 부부가구의 경우는 직장이 생길때까지라는 응답이 높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의 경우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라는 응답율이, 무직의 경우는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율이 높다. 월평균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군에서 결혼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은 경향이 발견된다.

노부모에 대한 경제적 부양에 비하여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에 대한 의견의 다양성이 크며, 응답자의 특성에 따른 차이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노부모의 부양에 대하여 최소한 빈곤으로부터는 보호해야 한다는 관점이 일반적으로 공유되고 있는 반면, 자녀의 부양에 대해서는 그 시기에 대하여 다양성이 존재하고 있는데, 특히 30대에서 자녀의 부양은 성인이 될 때까지라는 응답이 높아 급격히 자녀의 부양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50대는 노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과 더불어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는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자신의 노후준비와 함께 주관적으로 느낄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즉 존속과 비속에 대한 부양책임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노부모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 33.0%는 자녀가 결혼할 때까지, 32.1%는 학업을 마칠때까지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기본적인 부양에 대한 가족책임을 언급한 응답자의 34.3%는 학업을 마칠때까지로, 25.9%는 결혼할 때까지, 21.2%는 직장이 생길때까지로 응답하고 있다. 즉 부모의 부양에 대한 자녀의 책임에 대하여 상이한 입장을 갖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해서는 모두 학업을 마칠때까지를 가장 많이 응답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소수이기는 하지만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자녀에 대한 부양 시점에 대하여 비교적 다양한 시점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응답 결과는 부모의 부양에 대해서는 공적인 책임과 자녀의 책임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지만 자녀에 대한 부양의 경우는 서구와는 달리 성년이 지나서도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을 통하여 독자적인 생활이 가능할 때까지는 부양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10〉 응답자 특성별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전혀 책임이 없다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계 (명)
전체	20.9	50.1	23.3	5.7	100.0 (1,000)
지역					
광역시	19.7	50.2	25.8	4.3	100.0 (462)
도	21.9	50.0	21.2	6.9	100.0 (538)
성별					
남성	21.6	47.6	24.2	6.7	100.0 (496)
여성	20.2	52.6	22.4	4.8	100.0 (504)
연령					
30대	7.1	48.2	37.5	7.1	100.0 (253)
40대	21.5	50.7	21.2	6.6	100.0 (274)
50대	27.9	50.4	16.0	5.7	100.0 (244)
60대	27.9	52.9	16.9	2.2	100.0 (136)
70대	28.0	48.4	19.4	4.3	100.0 (93)
결혼상태					
미혼	3.3	49.3	42.0	5.3	100.0 (150)
유배우	23.9	50.0	20.2	5.9	100.0 (782)
이혼, 별거, 사별	25.0	52.9	17.6	4.4	100.0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20.3	49.6	25.0	5.1	100.0 (671)
부부가구	26.7	49.3	16.7	7.2	100.0 (221)
1인가구	13.1	52.5	28.3	6.1	100.0 (99)
직업					
화이트칼라	15.4	49.3	28.8	6.6	100.0 (410)
자영업	25.7	48.6	19.2	6.5	100.0 (245)
기타 직업	25.0	49.4	20.5	5.1	100.0 (156)
무직	23.3	54.5	19.0	3.2	100.0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0.7	56.2	19.8	3.3	100.0 (121)
100-200만원 미만	27.7	43.4	23.7	5.2	100.0 (173)
200-300만원 미만	16.4	54.8	23.7	5.0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15.6	50.6	28.8	5.0	100.0 (160)
400-500만원 미만	21.0	47.8	22.5	8.7	100.0 (138)
500만원 이상	24.1	50.6	19.3	6.0	100.0 (166)

20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11> 응답자 특성별 우리사회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성년이 되는 만 20세까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시까지	집을 마련할 때까지	평생 계속	형편에 따라	계 (명)
전체	15.0	33.7	20.1	26.9	0.8	2.4	0.7	0.4	100.0 (1,000)
지역									
광역시	16.2	34.8	22.3	22.9	1.1	1.3	1.3	0.0	100.0 (462)
도	13.9	32.7	18.2	30.3	0.6	3.3	0.2	0.7	100.0 (538)
성별									
남성	15.7	32.5	18.5	28.8	0.6	3.2	0.4	0.2	100.0 (496)
여성	14.3	34.9	21.6	25.0	1.0	1.6	1.0	0.6	100.0 (504)
연령									
30대	30.4	38.3	14.6	14.6	1.2	0.4	0.4	0.0	100.0 (253)
40대	18.6	42.0	17.5	19.3	0.4	2.2	0.0	0.0	100.0 (274)
50대	4.9	34.8	26.2	30.3	0.4	2.5	0.8	0.0	100.0 (244)
60대	5.1	22.8	22.1	41.2	0.7	5.1	2.2	0.7	100.0 (136)
70대	3.2	9.7	23.7	52.7	2.2	4.3	1.1	3.2	100.0 (93)
결혼상태									
미혼	32.0	38.0	18.7	10.0	0.7	0.7	0.0	0.0	100.0 (150)
유배우	12.7	33.8	20.5	28.8	0.8	2.8	0.5	0.3	100.0 (782)
이혼, 별거, 사별	4.4	23.5	19.1	42.6	1.5	1.5	4.4	2.9	100.0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6.4	37.0	19.2	23.8	1.0	1.9	0.6	0.0	100.0 (671)
부부가구	7.2	24.9	23.5	38.5	0.5	4.1	0.5	0.9	100.0 (221)
1인가구	23.2	29.3	18.2	23.2	0.0	2.0	2.0	2.0	100.0 (99)
직업									
화이트칼라	22.9	38.8	17.3	18.8	0.5	1.5	0.2	0.0	100.0 (410)
자영업	10.2	38.8	22.9	24.5	1.2	1.6	0.4	0.4	100.0 (245)
기타 직업	12.2	26.9	22.4	33.3	0.0	4.5	0.6	0.0	100.0 (156)
무직	6.3	21.7	20.6	42.3	1.6	3.7	2.1	1.6	100.0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4.1	19.0	24.0	47.1	0.8	2.5	0.8	1.7	100.0 (121)
100-200만원 미만	18.5	30.6	18.5	27.7	1.2	2.3	1.2	0.0	100.0 (173)
200-300만원 미만	11.9	36.1	22.4	23.7	0.5	5.0	0.5	0.0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20.6	38.1	20.0	20.0	0.0	0.6	0.6	0.0	100.0 (160)
400-500만원 미만	12.3	43.5	16.7	24.6	1.4	0.7	0.7	0.0	100.0 (138)
500만원 이상	18.1	34.3	18.7	24.1	1.2	2.4	0.6	0.6	100.0 (166)

〈표 12〉 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과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의식

노부모에 대한 부양책임	자녀에 대한 부양책임	성년이 되는 만20세 까지	학업을 마칠 때까지	직장이 생길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손자녀 양육시 까지	집을 마련할 때까지	평생 계속	형편에 따라	계 (명)
전체		15.0	33.7	20.1	26.9	0.8	2.4	0.7	0.4	100.0 (1,000)
전혀 책임이 없다		13.4	32.1	15.3	33.0	1.9	2.9	1.0	0.5	100.0 (209)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5.2	34.3	21.2	25.9	0.6	1.8	0.8	0.2	100.0 (501)
자녀와 비슷한 수준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14.6	35.2	21.5	24.9	0.4	2.1	0.4	0.9	100.0 (233)
자녀보다 더 여유있는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21.1	28.1	22.8	21.1	0.0	7.0	0.0	0.0	100.0 (57)

4. 노인에 대한 관점

가. 노인에 대한 이미지

연령차별적인 사회일수록 노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팽배하게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노인에 대한 이미지를 살펴보았다.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라는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관한 것과 둘째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가족대의 세대간 통합에의 기여와 같은 노인의 긍정적인 역할에 관한 질문을 하였다. 이에 더하여 노인은 젊은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고 하는 연령군간 공유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첫 번째 질문인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하여 동의한다는 응답이 86.9%이며 4점 만점에 3.1점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 질문인 가족내 기여에 대해서는 동의한다는 응답이 85.9%이며 평균점수 3.1점으로 첫 번째 질문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과거 경험의 공유와 관련해서는 79.0%가 노인은 젊은 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2.92점이다. 즉 경험의 공유에 대해서는 노인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생각보다는 동의율이 낮은 것이다.

노인의 사회적 기여가능성에 대해서는 도지역에 비해서는 광역시에서, 여자에 비해서는 남자가, 연령이 낮은 군에서 좀 더 긍정적인 답변이 높기는 하지만 제특 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다. 노인의 가족에서의 긍정적인 역할과 관련해서는 지역, 성별 차이는 유사하지만 연령군별 차이에서는 반대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사회적 기여에 대해서는 젊은층이 좀 더 긍정적이지만 가족내 역할에 대해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이 있으며, 이는 미혼보다는 기혼자에게서 긍정적인 경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편 노인과 젊은세대의 다양한 과거 경험공유에 대해서는 연령과는 특별한 경향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반면 화이트 칼라 직업을 가진 사람이나 저소득 및 고소득층에서 동의하지 않는 경향이 조금 큰 편이다.

〈표 13〉 응답자 특성별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종합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체	1.8	11.3	62.0	24.9	13.1	86.9	100.0 (1,000)	3.10	0.65
지역									
광역시	2.4	8.9	63.2	25.5	11.3	88.7	100.0 (462)	3.12	0.65
도	1.3	13.4	61.0	24.3	14.7	85.3	100.0 (538)	3.08	0.65
성별									
남성	2.4	10.7	57.3	29.6	13.1	86.9	100.0 (496)	3.14	0.69
여성	1.2	11.9	66.7	20.2	13.1	86.9	100.0 (504)	3.06	0.61
연령									
30대	2.0	9.1	63.2	25.7	11.1	88.9	100.0 (253)	3.13	0.64
40대	1.8	10.6	62.4	25.2	12.4	87.6	100.0 (274)	3.11	0.65
50대	1.6	11.1	58.6	28.7	12.7	87.3	100.0 (244)	3.14	0.67
60대	1.5	16.2	61.0	21.3	17.6	82.4	100.0 (136)	3.02	0.66
70대	2.2	12.9	67.7	17.2	15.1	84.9	100.0 (93)	3.00	0.63
결혼상태									
미혼	2.0	8.7	60.7	28.7	10.7	89.3	100.0 (150)	3.16	0.66
유배우	1.8	11.3	62.4	24.6	13.0	87.0	100.0 (782)	3.10	0.65
이혼, 별거, 사별	1.5	17.6	60.3	20.6	19.1	80.9	100.0 (68)	3.00	0.67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3	11.5	62.7	24.4	12.8	87.2	100.0 (671)	3.10	0.63
부부가구	2.7	8.1	62.9	26.2	10.9	89.1	100.0 (221)	3.13	0.66
1인가구	3.0	14.1	56.6	26.3	17.2	82.8	100.0 (99)	3.06	0.73
직업									
화이트칼라	2.4	10.5	60.7	26.3	12.9	87.1	100.0 (410)	3.11	0.67
자영업	1.2	12.2	57.6	29.0	13.5	86.5	100.0 (245)	3.14	0.67
기타 직업	1.3	9.0	66.7	23.1	10.3	89.7	100.0 (156)	3.12	0.60
무직	1.6	13.8	66.7	18.0	15.3	84.7	100.0 (189)	3.01	0.62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7	19.0	59.5	19.8	20.7	79.3	100.0 (121)	2.98	0.68
100~200만원 미만	2.3	12.7	63.6	21.4	15.0	85.0	100.0 (173)	3.04	0.66
200~300만원 미만	1.4	6.8	61.6	30.1	8.2	91.8	100.0 (219)	3.21	0.62
300~400만원 미만	1.3	15.0	66.3	17.5	16.3	83.8	100.0 (160)	3.00	0.61
400~500만원 미만	1.4	8.0	63.8	26.8	9.4	90.6	100.0 (138)	3.16	0.62
500만원 이상	2.4	8.4	57.2	31.9	10.8	89.2	100.0 (166)	3.19	0.68

24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14〉 응답자 특성별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명)

구분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종합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체	1.5	12.6	60.6	25.3	14.1	85.9	100.0 (1,000)	3.10	0.66
지역									
광역시	1.1	12.3	61.5	25.1	13.4	86.6	100.0 (462)	3.11	0.64
도	1.9	12.8	59.9	25.5	14.7	85.3	100.0 (538)	3.09	0.67
성별									
남성	1.6	11.3	56.3	30.8	12.9	87.1	100.0 (496)	3.16	0.68
여성	1.4	13.9	64.9	19.8	15.3	84.7	100.0 (504)	3.03	0.63
연령									
30대	0.8	13.4	62.8	22.9	14.2	85.8	100.0 (253)	3.08	0.62
40대	2.2	12.4	62.0	23.4	14.6	85.4	100.0 (274)	3.07	0.67
50대	1.6	14.3	57.0	27.0	16.0	84.0	100.0 (244)	3.09	0.69
60대	1.5	11.8	60.3	26.5	13.2	86.8	100.0 (136)	3.12	0.66
70대	1.1	7.5	60.2	31.2	8.6	91.4	100.0 (93)	3.22	0.62
결혼상태									
미혼	0.7	14.0	62.0	23.3	14.7	85.3	100.0 (150)	3.08	0.63
유배우	1.8	12.5	59.7	26.0	14.3	85.7	100.0 (782)	3.10	0.67
이혼, 별거, 사별	0.0	10.3	67.6	22.1	10.3	89.7	100.0 (68)	3.12	0.56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5	12.8	61.0	24.7	14.3	85.7	100.0 (671)	3.09	0.65
부부가구	2.3	10.4	62.0	25.3	12.7	87.3	100.0 (221)	3.10	0.66
1인가구	0.0	14.1	57.6	28.3	14.1	85.9	100.0 (99)	3.14	0.64
직업									
화이트칼라	1.5	12.7	62.4	23.4	14.1	85.9	100.0 (410)	3.08	0.64
자영업	2.0	12.7	58.0	27.3	14.7	85.3	100.0 (245)	3.11	0.69
기타 직업	1.9	14.1	59.0	25.0	16.0	84.0	100.0 (156)	3.07	0.68
무직	0.5	11.1	61.4	27.0	11.6	88.4	100.0 (189)	3.15	0.62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0.8	11.6	62.0	25.6	12.4	87.6	100.0 (121)	3.12	0.63
100-200만원 미만	1.7	13.3	61.3	23.7	15.0	85.0	100.0 (173)	3.07	0.66
200-300만원 미만	1.4	12.8	57.5	28.3	14.2	85.8	100.0 (219)	3.13	0.67
300-400만원 미만	0.6	11.9	63.1	24.4	12.5	87.5	100.0 (160)	3.11	0.61
400-500만원 미만	3.6	12.3	62.3	21.7	15.9	84.1	100.0 (138)	3.02	0.70
500만원 이상	0.6	13.3	59.6	26.5	13.9	86.1	100.0 (166)	3.12	0.64

〈표 15〉 응답자 특성별 ‘노인은 젊은 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명)

구분	노인은 젊은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3항목 종합 ¹⁾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 한다	종합						
					동의 하지 않음	동의 함					
전체	2.5	18.5	63.5	15.5	21.0	79.0	100.0 (1,000)	2.92	0.66	9.12	
지역											
광역시	2.8	16.9	63.9	16.5	19.7	80.3	100.0 (462)	2.94	0.67	9.16	
도	2.2	19.9	63.2	14.7	22.1	77.9	100.0 (538)	2.90	0.65	9.08	
성별											
남성	2.6	18.1	60.9	18.3	20.8	79.2	100.0 (496)	2.95	0.68	9.25	
여성	2.4	18.8	66.1	12.7	21.2	78.8	100.0 (504)	2.89	0.63	8.98	
연령											
30대	2.0	19.0	64.0	15.0	20.9	79.1	100.0 (253)	2.92	0.64	9.13	
40대	2.9	20.1	60.6	16.4	23.0	77.0	100.0 (274)	2.91	0.69	9.08	
50대	2.0	18.9	60.7	18.4	20.9	79.1	100.0 (244)	2.95	0.67	9.19	
60대	4.4	12.5	70.6	12.5	16.9	83.1	100.0 (136)	2.91	0.65	9.05	
70대	1.1	20.4	67.7	10.8	21.5	78.5	100.0 (93)	2.88	0.59	9.10	
결혼상태											
미혼	2.7	22.7	60.0	14.7	25.3	74.7	100.0 (150)	2.87	0.68	9.11	
유배우	2.0	17.8	63.9	16.2	19.8	80.2	100.0 (782)	2.94	0.65	9.14	
이혼, 별거, 사별	7.4	17.6	66.2	8.8	25.0	75.0	100.0 (68)	2.76	0.71	8.88	
가구형태											
재녀동거가구	2.8	19.1	62.1	15.9	21.9	78.1	100.0 (671)	2.91	0.68	9.10	
부부가구	0.9	15.4	67.4	16.3	16.3	83.7	100.0 (221)	2.99	0.60	9.22	
1인가구	4.0	21.2	63.6	11.1	25.3	74.7	100.0 (99)	2.82	0.68	9.02	
직업											
화이트칼라	2.4	20.7	61.0	15.9	23.2	76.8	100.0 (410)	2.90	0.67	9.09	
자영업	3.3	17.6	64.5	14.7	20.8	79.2	100.0 (245)	2.91	0.67	9.16	
기타 직업	1.9	15.4	67.9	14.7	17.3	82.7	100.0 (156)	2.96	0.62	9.14	
무직	2.1	17.5	64.0	16.4	19.6	80.4	100.0 (189)	2.95	0.65	9.11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4.1	22.3	60.3	13.2	26.4	73.6	100.0 (121)	2.83	0.70	8.93	
100~200만원 미만	1.2	18.5	65.3	15.0	19.7	80.3	100.0 (173)	2.94	0.62	9.05	
200~300만원 미만	1.8	16.0	63.0	19.2	17.8	82.2	100.0 (219)	3.00	0.65	9.33	
300~400만원 미만	3.1	16.9	71.3	8.8	20.0	80.0	100.0 (160)	2.86	0.60	8.97	
400~500만원 미만	1.4	19.6	63.0	15.9	21.0	79.0	100.0 (138)	2.93	0.64	9.12	
500만원 이상	3.6	19.9	57.2	19.3	23.5	76.5	100.0 (166)	2.92	0.73	9.23	

주: 1) 3항목(노인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상당한 지식과 경험을 갖고 있다, 노인은 집안의 결속과 화목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은 젊은 세대와 다양한 과거 경험을 공유한다)에 대한 응답결과를 상당히 동의한다를 4점 만점으로 계산하여 합산한 점수임.

나. 고령자에 대한 연령규범

한 사회는 특정 연령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령규범을 공유하게 된다. 연령분리적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노년기 이전에 이루어지는 학업 및 경제활동, 결혼과 관련된 질문과 노년기에서 매우 중요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고 있는 건강관리에 대한 질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마다 노인으로 생각하는 연령이 다를 수 있어 70대로 연령을 구체화하여 질문하였다.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대하여 90.4%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4점 만점에 3.23점이다. 이렇게 보편적인 견해로 자리잡고 있지만 응답자의 특성별 차이도 존재하고 있다. 성별로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긍정적인 관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이 높다. 즉 노인들이 노인에 대한 전통적인 연령규범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미혼에 비하여 기혼자가, 자녀비동거가구가 좋아보이지 않는다는 응답을 많이 하고 있다. 또한 직업이 화이트 칼라인 경우 긍정적인 답변이 가장 높아 93.4%에 달하고 있다. 소득수준과는 정비례하는 경향성을 보여 500만원 이상인 군의 경우 93.4%이다.

한편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86.2%가 긍정적으로 답변하고 있으며 평균점수는 3.05점으로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점수가 낮다. 이는 매우 좋아보인다는 응답이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은 33.0%에 달하고 있지만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의 19.5%에 불과하기 때문에 학습 등 자기개발과 관련해서는 긍정의 정도가 매우 높은 반면 일의 경우는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새로운 공부를 시작하는 것에 비해서는 제특성별 차이가 그리 크지 않고 뚜렷한 경향성도 보이고 있지 않다.

70대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보인다는 응답이 57.0%로 매우 낮는데 이는 일이나 자기개발의 경우는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강조와 활기찬 노년기의 향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반면, 노년기의 재혼은 사적

인 문제이며 다양한 가족관계의 변화를 가져오는 미시적인 영향력이 크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70대 노인의 재혼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성별 차이가 매우 커, 남성은 65.1%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여성은 49.0%에 불과하다. 이는 가족관계의 유지와 관리에 있어 여성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노년기 생활에 있어 여성의 독자성이 더 높게 인정되고 있다는 점 등이 작동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령군별 차이도 두드러지는데 30대는 75.1%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비하여 40대는 58.8%이며, 50대는 52.9%, 60대는 42.6%, 70대는 34.4%에 불과하다. 이는 연령이 높을수록 결혼은 일생에 한번이라는 전통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혼인 경우 기혼자에 비하여 긍정적인 응답률이 높는데 이는 이들 미혼자의 연령이 낮는데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가구형태별로는 부부 가구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이 낮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률이 67.3%로 가장 높다. 무직인 경우 34.9%에 불과한데 이는 이들의 다수가 60대 이상인 것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또한 소득별로는 \cap 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70대 노인의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즉 건강관리를 노년기에 실행되어야 하는 활동으로 보는 연령규범이 확실히 공유되고 있는 것이다.

<표 16>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종합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0.6	9.0	57.4	33.0	9.6	90.4	100.0 (1,000)	3.23	0.63
지역									
광역시	0.6	8.4	56.3	34.6	9.1	90.9	100.0 (462)	3.25	0.63
도	0.6	9.5	58.4	31.6	10.0	90.0	100.0 (538)	3.21	0.62
성별									
남성	1.0	11.7	51.8	35.5	12.7	87.3	100.0 (496)	3.22	0.68
여성	0.2	6.3	62.9	30.6	6.5	93.5	100.0 (504)	3.24	0.57
연령									
30대	0.4	3.2	58.9	37.5	3.6	96.4	100.0 (253)	3.34	0.56
40대	1.5	6.6	56.9	35.0	8.0	92.0	100.0 (274)	3.26	0.64
50대	0.0	11.1	54.9	34.0	11.1	88.9	100.0 (244)	3.23	0.63
60대	0.7	14.0	59.6	25.7	14.7	85.3	100.0 (136)	3.10	0.65
70대	0.0	19.4	58.1	22.6	19.4	80.6	100.0 (93)	3.03	0.65
결혼상태									
미혼	0.7	3.3	58.7	37.3	4.0	96.0	100.0 (150)	3.33	0.57
유배우	0.6	9.7	56.4	33.2	10.4	89.6	100.0 (782)	3.22	0.64
이혼, 별거, 사별	0.0	13.2	66.2	20.6	13.2	86.8	100.0 (68)	3.07	0.5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0.7	7.7	57.8	33.7	8.5	91.5	100.0 (671)	3.24	0.62
부부가구	0.5	12.7	53.8	33.0	13.1	86.9	100.0 (221)	3.19	0.66
1인가구	0.0	10.1	60.6	29.3	10.1	89.9	100.0 (99)	3.19	0.60
직업									
화이트칼라	0.2	6.3	53.7	39.8	6.6	93.4	100.0 (410)	3.33	0.60
자영업	1.2	10.6	59.6	28.6	11.8	88.2	100.0 (245)	3.16	0.65
기타 직업	1.3	12.8	57.1	28.8	14.1	85.9	100.0 (156)	3.13	0.67
무직	0.0	9.5	63.0	27.5	9.5	90.5	100.0 (189)	3.18	0.58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0.0	17.4	62.8	19.8	17.4	82.6	100.0 (121)	3.02	0.61
100-200만원 미만	0.6	9.2	60.1	30.1	9.8	90.2	100.0 (173)	3.20	0.62
200-300만원 미만	0.9	7.3	52.5	39.3	8.2	91.8	100.0 (219)	3.30	0.64
300-400만원 미만	0.0	9.4	60.0	30.6	9.4	90.6	100.0 (160)	3.21	0.60
400-500만원 미만	0.7	6.5	58.7	34.1	7.2	92.8	100.0 (138)	3.26	0.61
500만원 이상	1.2	5.4	55.4	38.0	6.6	93.4	100.0 (166)	3.30	0.63

<표 17>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명)

구분	70대 노인이 일을 하는 것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종합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1.0	12.8	66.7	19.5	13.8	86.2	100.0 (1,000)	3.05	0.60
지역									
광역시	1.1	10.8	66.2	21.9	11.9	88.1	100.0 (462)	3.09	0.60
도	0.9	14.5	67.1	17.5	15.4	84.6	100.0 (538)	3.01	0.60
성별									
남성	1.2	12.7	62.5	23.6	13.9	86.1	100.0 (496)	3.08	0.64
여성	0.8	12.9	70.8	15.5	13.7	86.3	100.0 (504)	3.01	0.56
연령									
30대	0.0	16.6	64.8	18.6	16.6	83.4	100.0 (253)	3.02	0.59
40대	1.8	8.8	74.5	15.0	10.6	89.4	100.0 (274)	3.03	0.56
50대	0.8	12.7	64.3	22.1	13.5	86.5	100.0 (244)	3.08	0.61
60대	1.5	14.0	64.0	20.6	15.4	84.6	100.0 (136)	3.04	0.64
70대	1.1	12.9	59.1	26.9	14.0	86.0	100.0 (93)	3.12	0.66
결혼상태									
미혼	0.0	17.3	64.7	18.0	17.3	82.7	100.0 (150)	3.01	0.60
유배우	1.2	12.4	67.9	18.5	13.6	86.4	100.0 (782)	3.04	0.60
이혼, 별거, 사별	1.5	7.4	57.4	33.8	8.8	91.2	100.0 (68)	3.24	0.6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3	13.4	67.2	18.0	14.8	85.2	100.0 (671)	3.02	0.61
부부가구	0.5	12.2	64.7	22.6	12.7	87.3	100.0 (221)	3.10	0.60
1인가구	0.0	11.1	64.6	24.2	11.1	88.9	100.0 (99)	3.13	0.58
직업									
화이트칼라	0.0	14.4	67.8	17.8	14.4	85.6	100.0 (410)	3.03	0.57
자영업	2.9	10.2	65.3	21.6	13.1	86.9	100.0 (245)	3.06	0.66
기타 직업	0.0	10.9	69.9	19.2	10.9	89.1	100.0 (156)	3.08	0.54
무직	1.6	14.3	63.5	20.6	15.9	84.1	100.0 (189)	3.03	0.64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0.8	12.4	66.1	20.7	13.2	86.8	100.0 (121)	3.07	0.60
100-200만원 미만	1.7	13.3	65.3	19.7	15.0	85.0	100.0 (173)	3.03	0.63
200-300만원 미만	0.5	12.8	66.7	20.1	13.2	86.8	100.0 (219)	3.06	0.59
300-400만원 미만	0.6	8.8	75.0	15.6	9.4	90.6	100.0 (160)	3.06	0.52
400-500만원 미만	0.7	15.2	66.7	17.4	15.9	84.1	100.0 (138)	3.01	0.60
500만원 이상	1.2	14.5	62.7	21.7	15.7	84.3	100.0 (166)	3.05	0.64

30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18>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재혼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70대 노인이 재혼하는 것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8.9	34.1	49.7	7.3	43.0	57.0	100.0 (1,000)	2.55	0.76	
지역										
광역시	8.4	35.5	49.8	6.3	43.9	56.1	100.0 (462)	2.54	0.74	
도	9.3	32.9	49.6	8.2	42.2	57.8	100.0 (538)	2.57	0.77	
성별										
남성	6.7	28.2	55.8	9.3	34.9	65.1	100.0 (496)	2.68	0.73	
여성	11.1	39.9	43.7	5.4	51.0	49.0	100.0 (504)	2.43	0.76	
연령										
30대	5.1	19.8	64.8	10.3	24.9	75.1	100.0 (253)	2.80	0.68	
40대	5.8	35.4	51.5	7.3	41.2	58.8	100.0 (274)	2.60	0.71	
50대	10.2	36.9	44.7	8.2	47.1	52.9	100.0 (244)	2.51	0.79	
60대	16.2	41.2	39.0	3.7	57.4	42.6	100.0 (136)	2.30	0.78	
70대	14.0	51.6	32.3	2.2	65.6	34.4	100.0 (93)	2.23	0.71	
결혼상태										
미혼	6.7	19.3	66.0	8.0	26.0	74.0	100.0 (150)	2.75	0.69	
유배우	9.0	36.2	47.6	7.3	45.1	54.9	100.0 (782)	2.53	0.76	
이혼, 별거, 사별	13.2	42.6	38.2	5.9	55.9	44.1	100.0 (68)	2.37	0.79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7.3	32.8	52.3	7.6	40.1	59.9	100.0 (671)	2.60	0.73	
부부가구	13.1	38.5	41.2	7.2	51.6	48.4	100.0 (221)	2.43	0.81	
1인가구	9.1	33.3	51.5	6.1	42.4	57.6	100.0 (99)	2.55	0.75	
직업										
화이트칼라	5.4	27.3	58.3	9.0	32.7	67.3	100.0 (410)	2.71	0.70	
자영업	9.8	34.3	47.8	8.2	44.1	55.9	100.0 (245)	2.54	0.78	
기타 직업	7.1	34.6	55.1	3.2	41.7	58.3	100.0 (156)	2.54	0.68	
무직	16.9	48.1	29.1	5.8	65.1	34.9	100.0 (189)	2.24	0.80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4.9	45.5	37.2	2.5	60.3	39.7	100.0 (121)	2.27	0.74	
100-200만원 미만	12.1	28.9	51.4	7.5	41.0	59.0	100.0 (173)	2.54	0.80	
200-300만원 미만	5.0	32.4	53.9	8.7	37.4	62.6	100.0 (219)	2.66	0.71	
300-400만원 미만	8.1	35.6	49.4	6.9	43.8	56.3	100.0 (160)	2.55	0.74	
400-500만원 미만	5.8	35.5	49.3	9.4	41.3	58.7	100.0 (138)	2.62	0.74	
500만원 이상	9.0	31.3	51.8	7.8	40.4	59.6	100.0 (166)	2.58	0.76	

〈표 19〉 응답자 특성별 70대 노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태도

(단위 : %, 명)

구분	70대 노인이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노년기 연령 규범의 유연성 ¹⁾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다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다	좋아 보이는 편이다	매우 좋아 보이는 편이다	종합						
					좋아 보이지 않음	좋아 보임					
전체	0.3	1.1	47.2	51.4	1.4	98.6	100.0 (1,000)	3.50	0.54	12.33	
지역											
광역시	0.2	1.1	46.8	51.9	1.3	98.7	100.0 (462)	3.50	0.53	12.38	
도	0.4	1.1	47.6	50.9	1.5	98.5	100.0 (538)	3.49	0.54	12.28	
성별											
남성	0.4	1.0	43.8	54.8	1.4	98.6	100.0 (496)	3.53	0.54	12.51	
여성	0.2	1.2	50.6	48.0	1.4	98.6	100.0 (504)	3.46	0.53	12.14	
연령											
30대	0.0	0.0	48.2	51.8	0.0	100.0	100.0 (253)	3.52	0.50	12.68	
40대	0.7	0.7	43.4	55.1	1.5	98.5	100.0 (274)	3.53	0.56	12.41	
50대	0.0	1.2	43.9	54.9	1.2	98.8	100.0 (244)	3.54	0.52	12.35	
60대	0.0	2.9	52.9	44.1	2.9	97.1	100.0 (136)	3.41	0.55	11.85	
70대	1.1	2.2	55.9	40.9	3.2	96.8	100.0 (93)	3.37	0.59	11.74	
결혼상태											
미혼	0.0	0.0	52.7	47.3	0.0	100.0	100.0 (150)	3.47	0.50	12.56	
유배우	0.4	1.2	45.3	53.2	1.5	98.5	100.0 (782)	3.51	0.54	12.31	
이혼, 별거, 사별	0.0	2.9	57.4	39.7	2.9	97.1	100.0 (68)	3.37	0.54	12.04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0.3	0.9	45.6	53.2	1.2	98.8	100.0 (671)	3.52	0.53	12.38	
부부가구	0.5	1.4	47.1	51.1	1.8	98.2	100.0 (221)	3.49	0.55	12.20	
1인가구	0.0	2.0	57.6	40.4	2.0	98.0	100.0 (99)	3.38	0.53	12.25	
직업											
화이트칼라	0.2	0.7	45.4	53.7	1.0	99.0	100.0 (410)	3.52	0.53	12.60	
자영업	0.4	1.2	44.1	54.3	1.6	98.4	100.0 (245)	3.52	0.55	12.28	
기타 직업	0.6	1.9	50.6	46.8	2.6	97.4	100.0 (156)	3.44	0.57	12.20	
무직	0.0	1.1	52.4	46.6	1.1	98.9	100.0 (189)	3.46	0.52	11.90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0.0	3.3	63.6	33.1	3.3	96.7	100.0 (121)	3.30	0.53	11.66	
100-200만원 미만	0.6	1.2	52.0	46.2	1.7	98.3	100.0 (173)	3.44	0.55	12.21	
200-300만원 미만	0.0	1.4	41.6	57.1	1.4	98.6	100.0 (219)	3.56	0.52	12.58	
300-400만원 미만	0.0	0.0	45.6	54.4	0.0	100.0	100.0 (160)	3.54	0.50	12.36	
400-500만원 미만	1.4	0.7	46.4	51.4	2.2	97.8	100.0 (138)	3.48	0.59	12.37	
500만원 이상	0.0	0.6	42.2	57.2	0.6	99.4	100.0 (166)	3.57	0.51	12.50	

주: 1) 4개항목(70대 노인이 외국어 등 새로운 공부를 하는 것, 일을 하는 것, 재혼하는 것, 건강관리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4점 만점으로 하여 합산한 점수로 최대 16점임.

5. 연령차별과 갈등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는가에 대하여 28.7%가 그렇다고 응답하고 있다. 즉 10명중 3명 정도가 우리사회에 연령차별, 좀 더 구체적으로는 노인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에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에 갈등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84.8%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다수가 우리사회에 세대간의 갈등이 있다고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로 구현되고 있다는 느끼는 응답자는 약 30%로 갈등의 인지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사회에 세대간 갈등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발현될 가능성이 높음을 함축한다.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은 지역 성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령별로는 차이가 있다. 50대 이상에서는 30% 이상이 이러한 분위기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미혼이나 유배우자에 비하여 이혼·별거·사별자의 경우, 또한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높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 직업군이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이 낮다. 또한 가구소득이 200만원 미만이거나 500만원 이상인 최고 및 최저 소득군에서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응답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과 관련해서는 광역시보다는 도 지역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갈등이 있다는 응답률이 높다. 또한 연령이 낮을수록 세대간 갈등을 언급한 비율이 높아 구체적인 갈등의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파악이 요구된다 하겠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자에게서 높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미혼자의 연령이 낮다는 점에서 연령별 차이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직업별 비교에서 무직자에게서 낮은 경향도 무직자중 다수가 높은 연령대의 응답자라는 점과 연계되어 있다 하겠다. 월평균소득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하인 집단에서 세대간 갈등이 있다는 응답이 가장 낮다.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에 대하여 살펴

보았는데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61.7%이며, 다음은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해서로 20.2%이다. 비노인세대가 노인세대를 잘 몰라서가 9.8%, 반대로 노인세대가 비노인세대를 잘 몰라서가 7.2%이다. 즉 세대간의 이해부족이 17.0%이다.

이러한 응답결과를 제특성별로 비교해보면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으나 성별 차이는 두드러진다. 남성의 경우 세대가 서로를 잘 몰라서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여성의 경우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라는 응답이 높다. 즉 남성의 경우는 세대가 잘 모르므로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접촉의 기회를 주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여성의 경우는 생각의 차이로 공통점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로 보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연령군별로는 70대의 응답자에게서 28.4%가 비노인세대가 노인세대를 잘 모르는 것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더불어 13.4%가 노인세대가 비노인세대를 잘 몰라서 생기는 문제로 보고 있고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관점은 48.1%인데 비하여 30대에서는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응답이 68.4%에 달하고 있다. 젊은 세대가 갈등을 좀 더 근본적이고도 해결하기 어려운 원인에서 찾고 있는 것이다.

34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20〉 응답자 특성별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생각'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 명)

구분	우리사회에 노인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분위기가 있다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어느정도 동의한다	상당히 동의한다	종합				
					동의하지 않음	동의함			
전체	11.2	60.1	25.8	2.9	71.3	28.7	100.0 (1,000)	2.20	0.67
지역									
광역시	11.0	59.3	27.5	2.2	70.3	29.7	100.0 (462)	2.21	0.66
도	11.3	60.8	24.3	3.5	72.1	27.9	100.0 (538)	2.20	0.68
성별									
남성	12.9	58.1	26.4	2.6	71.0	29.0	100.0 (496)	2.19	0.68
여성	9.5	62.1	25.2	3.2	71.6	28.4	100.0 (504)	2.22	0.65
연령									
30대	9.1	68.8	19.4	2.8	77.9	22.1	100.0 (253)	2.16	0.61
40대	12.0	60.9	23.7	3.3	73.0	27.0	100.0 (274)	2.18	0.68
50대	13.5	56.1	27.9	2.5	69.7	30.3	100.0 (244)	2.19	0.69
60대	6.6	56.6	34.6	2.2	63.2	36.8	100.0 (136)	2.32	0.63
70대	15.1	49.5	31.2	4.3	64.5	35.5	100.0 (93)	2.25	0.76
결혼상태									
미혼	10.0	65.3	20.0	4.7	75.3	24.7	100.0 (150)	2.19	0.67
유배우	11.4	59.6	26.7	2.3	71.0	29.0	100.0 (782)	2.20	0.66
이혼, 별거, 사별	11.8	54.4	27.9	5.9	66.2	33.8	100.0 (68)	2.28	0.7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9.8	61.7	26.1	2.4	71.5	28.5	100.0 (671)	2.21	0.64
부부가구	13.1	59.7	24.4	2.7	72.9	27.1	100.0 (221)	2.17	0.68
1인가구	17.2	49.5	27.3	6.1	66.7	33.3	100.0 (99)	2.22	0.80
직업									
화이트칼라	11.2	63.2	23.2	2.4	74.4	25.6	100.0 (410)	2.17	0.64
자영업	10.6	58.0	28.6	2.9	68.6	31.4	100.0 (245)	2.24	0.67
기타 직업	11.5	55.1	28.8	4.5	66.7	33.3	100.0 (156)	2.26	0.72
무직	11.6	60.3	25.4	2.6	72.0	28.0	100.0 (189)	2.19	0.67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13.2	52.1	32.2	2.5	65.3	34.7	100.0 (121)	2.24	0.71
100-200만원 미만	8.7	59.0	27.7	4.6	67.6	32.4	100.0 (173)	2.28	0.69
200-300만원 미만	12.8	62.1	21.0	4.1	74.9	25.1	100.0 (219)	2.16	0.69
300-400만원 미만	11.9	62.5	21.9	3.8	74.4	25.6	100.0 (160)	2.18	0.68
400-500만원 미만	8.7	65.2	24.6	1.4	73.9	26.1	100.0 (138)	2.19	0.60
500만원 이상	11.4	57.2	31.3	0.0	68.7	31.3	100.0 (166)	2.20	0.62

〈표 21〉 응답자 특성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 존재에 대한 동의 정도

(단위: %, 명)

구분	우리사회에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 갈등이 있다								
	매우 많다	많은 편이다	없는 편이다	전혀 없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있는 편	없는 편			
전체	12.1	72.7	14.4	0.8	84.8	15.2	100.0 (1,000)	3.10	0.65
지역									
광역시	12.7	73.8	13.5	0.0	86.5	13.5	100.0 (462)	3.12	0.65
도	11.6	71.8	15.1	1.5	83.4	16.6	100.0 (538)	3.08	0.65
성별									
남성	11.6	70.6	16.4	1.4	82.2	17.8	100.0 (496)	3.14	0.69
여성	12.6	74.9	12.4	0.2	87.4	12.6	100.0 (504)	3.06	0.61
연령									
30대	11.9	78.3	9.9	0.0	90.1	9.9	100.0 (253)	3.13	0.64
40대	15.1	70.1	13.7	1.1	85.2	14.8	100.0 (274)	3.11	0.65
50대	13.6	74.8	11.6	0.0	88.4	11.6	100.0 (244)	3.14	0.67
60대	6.7	69.6	21.5	2.2	76.3	23.7	100.0 (136)	3.02	0.66
70대	7.5	64.5	25.8	2.2	72.0	28.0	100.0 (93)	3.00	0.63
결혼상태									
미혼	13.3	80.7	6.0	0.0	94.0	6.0	100.0 (150)	3.16	0.66
유배우	12.0	71.8	15.3	0.9	83.8	16.2	100.0 (782)	3.10	0.65
이혼, 별거, 사별	10.3	66.2	22.1	1.5	76.5	23.5	100.0 (68)	3.00	0.67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14.3	72.2	13.1	0.5	86.5	13.5	100.0 (671)	3.10	0.63
부부가구	5.0	74.1	19.1	1.8	79.1	20.9	100.0 (221)	3.13	0.66
1인가구	14.1	70.7	14.1	1.0	84.8	15.2	100.0 (99)	3.06	0.73
직업									
화이트칼라	14.9	73.8	10.5	0.7	88.8	11.2	100.0 (410)	3.11	0.67
자영업	10.7	73.6	15.3	0.4	84.3	15.7	100.0 (245)	3.14	0.67
기타 직업	9.1	77.3	13.0	0.6	86.4	13.6	100.0 (156)	3.12	0.60
무직	10.1	65.6	22.8	1.6	75.7	24.3	100.0 (189)	3.01	0.62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9.1	66.9	22.3	1.7	76.0	24.0	100.0 (121)	2.98	0.68
100~200만원 미만	8.8	77.2	14.0	0.0	86.0	14.0	100.0 (173)	3.04	0.66
200~300만원 미만	11.9	74.3	12.4	1.4	86.2	13.8	100.0 (219)	3.21	0.62
300~400만원 미만	12.5	74.4	12.5	0.6	86.9	13.1	100.0 (160)	3.00	0.61
400~500만원 미만	13.9	71.5	13.9	0.7	85.4	14.6	100.0 (138)	3.16	0.62
500만원 이상	15.8	70.3	13.3	0.6	86.1	13.9	100.0 (166)	3.19	0.68

〈표 22〉 응답자 특성별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

(단위 : % , 명)

구분	생각과 가치관에 차이가 있어서	자기 세대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노인 세대가 비노인 세대를 잘 몰라서	비노인 세대가 노인 세대를 잘 몰라서	기타	계 (명)
전체	61.7	20.2	7.2	9.8	1.1	100.0 (843)
지역						
광역시	61.1	19.2	7.1	10.9	1.8	100.0 (396)
도	62.2	21.0	7.4	8.9	0.4	100.0 (447)
성별						
남성	57.3	21.2	7.7	12.8	1.0	100.0 (405)
여성	65.8	19.2	6.8	7.1	1.1	100.0 (438)
연령						
30대	68.4	19.7	5.3	5.3	1.3	100.0 (228)
40대	64.9	19.5	4.3	10.4	0.9	100.0 (231)
50대	56.1	24.8	8.9	9.3	0.9	100.0 (214)
60대	59.2	20.4	10.7	7.8	1.9	100.0 (103)
70대	49.3	9.0	13.4	28.4	0.0	100.0 (67)
결혼상태						
미혼	68.8	17.7	5.7	5.7	2.1	100.0 (141)
유배우	61.2	20.9	7.1	9.8	0.9	100.0 (650)
이혼, 별거, 사별	48.1	17.3	13.5	21.2	0.0	100.0 (52)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3.7	20.0	6.8	8.5	1.0	100.0 (576)
부부가구	58.6	21.3	7.5	11.5	1.1	100.0 (174)
1인가구	54.8	17.9	9.5	16.7	1.2	100.0 (84)
직업						
화이트칼라	66.4	18.5	5.2	9.1	0.8	100.0 (363)
자영업	56.9	24.5	8.8	7.4	2.5	100.0 (204)
기타 직업	61.7	18.0	6.8	12.8	0.8	100.0 (133)
무직	56.6	20.3	10.5	12.6	0.0	100.0 (143)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51.1	12.0	14.1	22.8	0.0	100.0 (92)
100-200만원 미만	61.9	21.1	10.9	5.4	0.7	100.0 (147)
200-300만원 미만	64.4	20.2	5.3	9.6	0.5	100.0 (188)
300-400만원 미만	66.9	22.3	2.9	6.5	1.4	100.0 (139)
400-500만원 미만	60.7	18.8	8.5	10.3	1.7	100.0 (117)
500만원 이상	60.6	22.5	4.9	9.9	2.1	100.0 (142)

6. 노인과의 접촉 실태

다른 연령층과의 접촉이 빈번할수록 다른 연령에 대한 이해의 정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을 알고 있는가? 이야기를 나누는 등의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78.6%가 가족 외에 인사를 하고 지내는 노인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62.2%는 최근 1달 사이에 가족 외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러한 두가지 응답을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최근 1달 사이에 가족 외의 노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적이 있는 등 가장 노인과의 접촉이 많은 경우가 58.3%, 알고 지내는 노인은 있지만 노인과의 대화는 없는 경우가 20.3%이며, 알고 지내는 노인은 없지만 노인과의 대화는 있었던 경우가 3.9%이며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대화도 없는 응답자가 17.5%이다.

지역별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성별로는 여성의 경우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노인과의 대화도 있다는 응답자는 61.1%로 남성의 55.4%보다 높다. 연령군별로는 연령이 낮은 응답자에게서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대화도 없다는 응답율이 높다. 30대의 경우 10명중 3명이 가족 외의 노인과 접촉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별로는 미혼인 경우, 1인가구인 경우 동 비율이 높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에게서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대화도 없다는 응답율이 23.9%에 달하고 있다. 월평균소득별로는 소득이 낮은 경우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노인과의 대화도 있다는 응답이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23〉 제특성별 노인과의 접촉 실태

(단위 : % , 명)

	가족 외 인사하고 지내는 노인이 있는 비율	최근 1달간 가족 외 노인과 이야기 나눈 적이 있는 비율	노인과의 접촉				계 (명)
			알고 지내는 노인도 있고 노인과의 대화도 있음	알고 지내는 노인은 있지만 노인과의 대화는 없음	알고 지내는 노인은 없지만 노인과의 대화는 있음	알고 지내는 노인도 없고 노인과의 대화도 없음	
전체	78.6	62.2	58.3	20.3	3.9	17.5	100.0 (1,000)
지역							
광역시	77.7	64.1	59.5	18.2	4.5	17.7	100.0 (462)
도	79.4	60.6	57.2	22.1	3.3	17.3	100.0 (538)
성별							
남성	76.6	60.1	55.4	21.2	4.6	18.8	100.0 (496)
여성	80.6	64.3	61.1	19.4	3.2	16.3	100.0 (504)
연령							
30대	67.6	42.3	39.1	28.5	3.2	29.2	100.0 (253)
40대	78.8	58.4	53.6	25.2	4.7	16.4	100.0 (274)
50대	82.4	68.0	64.8	17.6	3.3	14.3	100.0 (244)
60대	89.0	84.6	79.4	9.6	5.1	5.9	100.0 (136)
70대	82.8	79.6	76.3	6.5	3.2	14.0	100.0 (93)
결혼상태							
미혼	62.7	42.7	37.3	25.3	5.3	32.0	100.0 (150)
유배우	81.6	65.7	61.8	19.8	4.0	14.5	100.0 (782)
이혼, 별거, 사별	79.4	64.7	64.7	14.7	0.0	20.6	100.0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78.4	59.2	55.4	23.0	3.7	17.9	100.0 (671)
부부가구	80.5	73.8	68.8	11.8	5.0	14.5	100.0 (221)
1인가구	73.7	57.6	54.5	19.2	3.0	23.2	100.0 (99)
직업							
화이트칼라	70.7	50.7	45.4	25.4	5.4	23.9	100.0 (410)
자영업	84.1	68.2	64.9	19.2	3.3	12.7	100.0 (245)
기타 직업	79.5	67.9	64.1	15.4	3.8	16.7	100.0 (156)
무직	87.8	74.6	73.0	14.8	1.6	10.6	100.0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83.5	72.7	70.2	13.2	2.5	14.0	100.0 (121)
100-200만원 미만	80.9	68.8	64.2	16.8	4.6	14.5	100.0 (173)
200-300만원 미만	78.5	60.3	56.6	21.9	3.7	17.8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75.6	59.4	53.1	22.5	6.3	18.1	100.0 (160)
400-500만원 미만	72.5	52.9	49.3	23.2	3.6	23.9	100.0 (138)
500만원 이상	78.9	61.4	58.4	20.5	3.0	18.1	100.0 (166)

7. 중년층의 노인에 대한 행동

우리사회에서 비노인은 노인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 보았다. 50대까지를 응답대상자로 하였는데,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을 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이 12.1%이며,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4%,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응답이 7.0%이다. 즉 노인에 대하여 무시 또는 소극적인 배제행동이 10% 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을 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광역시에서 월등히 높고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높다. 또한 30대에서 이러한 응답이 높아 16.6%이며, 미혼인 경우 22.7%에 달하고 있고 1인가구 거주자의 경우도 이러한 경험이 많아서 21.3%에 달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화이트 칼라직종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아 14.1%이며, 소득수준별로는 U자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은 적이 있다는 응답의 경우는 남성에 비하여 여성에게서 높고, 미혼자에게서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는 응답의 경우는 30대의 경우 9.1%, 미혼 9.3%로 높은 특징을 보인다.

40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24>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눈을 감거나 모르는 척

(단위 : %, 명)

구분	버스, 지하철에서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지 않기 위해 모르는 척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자주 있다	종합					
					없는 편	있는 편				
전체	55.3	32.7	11.3	0.8	87.9	12.1	100.0 (771)	1.58	0.72	
지역										
광역시	51.9	32.2	14.7	1.1	84.2	15.8	100.0 (360)	1.65	0.77	
도	58.2	33.1	8.3	0.5	91.2	8.8	100.0 (411)	1.51	0.67	
성별										
남성	61.1	28.1	10.0	0.8	89.3	10.7	100.0 (391)	1.50	0.70	
여성	49.2	37.4	12.6	0.8	86.6	13.4	100.0 (380)	1.65	0.73	
연령										
30대	42.7	40.7	15.8	0.8	83.4	16.6	100.0 (253)	1.75	0.74	
40대	60.9	31.4	7.3	0.4	92.3	7.7	100.0 (274)	1.47	0.65	
50대	61.9	25.8	11.1	1.2	87.7	12.3	100.0 (244)	1.52	0.74	
결혼상태										
미혼	34.0	43.3	22.0	0.7	77.3	22.7	100.0 (150)	1.89	0.76	
유배우	60.5	29.9	8.7	0.8	90.5	9.5	100.0 (608)	1.50	0.69	
이혼, 별거, 사별	53.8	38.5	7.7	0.0	92.3	7.7	100.0 (13)	1.54	0.66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55.6	33.2	10.5	0.7	88.9	11.1	100.0 (593)	1.56	0.70	
부부가구	59.3	28.7	11.1	0.9	88.0	12.0	100.0 (108)	1.54	0.73	
1인가구	44.3	34.4	19.7	1.6	78.7	21.3	100.0 (61)	1.79	0.82	
직업										
화이트칼라	49.6	36.3	13.6	0.5	85.9	14.1	100.0 (391)	1.65	0.73	
자영업	60.9	26.2	12.4	0.5	87.1	12.9	100.0 (202)	1.52	0.73	
기타 직업	64.2	29.4	5.5	0.9	93.6	6.4	100.0 (109)	1.43	0.64	
무직	56.5	36.2	4.3	2.9	92.8	7.2	100.0 (69)	1.54	0.72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51.7	34.5	10.3	3.4	86.2	13.8	100.0 (29)	1.66	0.81	
100-200만원 미만	47.4	37.1	14.7	0.9	84.5	15.5	100.0 (116)	1.69	0.75	
200-300만원 미만	61.1	29.2	7.6	2.2	90.3	9.7	100.0 (185)	1.51	0.73	
300-400만원 미만	56.2	34.2	9.6	0.0	90.4	9.6	100.0 (146)	1.53	0.67	
400-500만원 미만	57.7	32.3	10.0	0.0	90.0	10.0	100.0 (130)	1.52	0.67	
500만원 이상	54.1	30.8	15.1	0.0	84.9	15.1	100.0 (146)	1.61	0.74	

<표 25>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단위: %, 명)

구분	카페, 식당 등에서 노인이 있으면 되도록 멀리 떨어진 자리에 앉는다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자주 있다	종합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없는 편	있는 편			
전체	66.1	27.5	5.7	0.6	93.6	6.4	100.0 (771)	1.41	0.63
지역									
광역시	64.4	28.9	5.8	0.8	93.3	6.7	100.0 (360)	1.43	0.64
도	67.6	26.3	5.6	0.5	93.9	6.1	100.0 (411)	1.39	0.62
성별									
남성	67.8	26.6	4.9	0.8	94.4	5.6	100.0 (391)	1.39	0.62
여성	64.5	28.4	6.6	0.5	92.9	7.1	100.0 (380)	1.43	0.64
연령									
30대	64.4	28.9	5.5	1.2	93.3	6.7	100.0 (253)	1.43	0.66
40대	68.6	25.5	5.8	0.0	94.2	5.8	100.0 (274)	1.37	0.59
50대	65.2	28.3	5.7	0.8	93.4	6.6	100.0 (244)	1.42	0.64
결혼상태									
미혼	60.7	31.3	7.3	0.7	92.0	8.0	100.0 (150)	1.48	0.66
유배우	67.4	26.6	5.3	0.7	94.1	5.9	100.0 (608)	1.39	0.62
이혼, 별거, 사별	69.2	23.1	7.7	0.0	92.3	7.7	100.0 (13)	1.38	0.6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7.8	26.0	5.6	0.7	93.8	6.2	100.0 (593)	1.39	0.62
부부가구	64.8	28.7	5.6	0.9	93.5	6.5	100.0 (108)	1.43	0.64
1인가구	54.1	39.3	6.6	0.0	93.4	6.6	100.0 (61)	1.52	0.62
직업									
화이트칼라	65.5	28.1	5.6	0.8	93.6	6.4	100.0 (391)	1.42	0.63
자영업	67.3	26.7	5.4	0.5	94.1	5.9	100.0 (202)	1.39	0.62
기타 직업	64.2	29.4	6.4	0.0	93.6	6.4	100.0 (109)	1.42	0.61
무직	69.6	23.2	5.8	1.4	92.8	7.2	100.0 (69)	1.39	0.67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51.7	41.4	3.4	3.4	93.1	6.9	100.0 (29)	1.59	0.73
100~200만원 미만	65.5	26.7	7.8	0.0	92.2	7.8	100.0 (116)	1.42	0.63
200~300만원 미만	66.5	26.5	5.4	1.6	93.0	7.0	100.0 (185)	1.42	0.67
300~400만원 미만	69.2	24.0	6.2	0.7	93.2	6.8	100.0 (146)	1.38	0.64
400~500만원 미만	63.1	30.0	6.9	0.0	93.1	6.9	100.0 (130)	1.44	0.62
500만원 이상	69.2	28.1	2.7	0.0	97.3	2.7	100.0 (146)	1.34	0.53

42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26>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

(단위 : %, 명)

구분	잘 모르는 노인이 말을 시키면 건성으로 대답한다							계 (명)	4점 평균	표준 편차
	전혀 없다	없는 편이다	있는 편이다	자주 있다	종합					
					없는 편	있는 편				
전체	63.9	29.1	6.4	0.6	93.0	7.0	100.0 (771)	1.44	0.64	
지역										
광역시	61.9	31.1	6.1	0.8	93.1	6.9	100.0 (360)	1.46	0.65	
도	65.7	27.3	6.6	0.5	92.9	7.1	100.0 (411)	1.42	0.64	
성별										
남성	64.2	29.7	5.4	0.8	93.9	6.1	100.0 (391)	1.43	0.63	
여성	63.7	28.4	7.4	0.5	92.1	7.9	100.0 (380)	1.45	0.65	
연령										
30대	56.1	34.8	8.3	0.8	90.9	9.1	100.0 (253)	1.54	0.68	
40대	65.3	29.9	4.4	0.4	95.3	4.7	100.0 (274)	1.40	0.59	
50대	70.5	22.1	6.6	0.8	92.6	7.4	100.0 (244)	1.38	0.65	
결혼상태										
미혼	52.7	38.0	8.7	0.7	90.7	9.3	100.0 (150)	1.57	0.68	
유배우	66.4	27.0	5.9	0.7	93.4	6.6	100.0 (608)	1.41	0.63	
이혼, 별거, 사별	76.9	23.1	0.0	0.0	100.0	0.0	100.0 (13)	1.23	0.44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64.6	28.3	6.4	0.7	92.9	7.1	100.0 (593)	1.43	0.64	
부부가구	66.7	26.9	5.6	0.9	93.5	6.5	100.0 (108)	1.41	0.64	
1인가구	54.1	39.3	6.6		93.4	6.6	100.0 (61)	1.52	0.62	
직업										
화이트칼라	61.9	30.7	6.6	0.8	92.6	7.4	100.0 (391)	1.46	0.65	
자영업	66.3	25.7	7.9		92.1	7.9	100.0 (202)	1.42	0.64	
기타 직업	65.1	30.3	3.7	0.9	95.4	4.6	100.0 (109)	1.40	0.61	
무직	66.7	27.5	4.3	1.4	94.2	5.8	100.0 (69)	1.41	0.65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55.2	37.9	3.4	3.4	93.1	6.9	100.0 (29)	1.55	0.74	
100-200만원 미만	60.3	30.2	8.6	0.9	90.5	9.5	100.0 (116)	1.50	0.69	
200-300만원 미만	67.0	24.9	6.5	1.6	91.9	8.1	100.0 (185)	1.43	0.69	
300-400만원 미만	69.2	24.7	6.2	0.0	93.8	6.2	100.0 (146)	1.37	0.60	
400-500만원 미만	58.5	37.7	3.8	0.0	96.2	3.8	100.0 (130)	1.45	0.57	
500만원 이상	65.8	26.7	7.5	0.0	92.5	7.5	100.0 (146)	1.42	0.63	

8. 고령친화적 정책의 우선순위

우리사회가 노년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정책적 노력으로는 노인이 좋아할만한 내용의 영화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와 같은 콘텐츠 개발이 63.4%이며, 다음이 영화관, 헬스클럽 등을 노인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다와 같은 고령친화적 물리적 기반마련이 27.9%, 노인만을 위한 영화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가 4.4%이다. 즉 콘텐츠는 노인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것으로 개발하되, 이러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노인만을 위한 분리된 공간 보다는 일반적인 인프라의 고령친화성을 제고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광역시에 비하여 도지역에서,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노인이 좋아할만한 내용의 영화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응답율이 조금 높다. 남성의 경우 노인만을 위한 영화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는 응답이 5.1%로 여성의 3.8%에 비하여 높다. 연령이나 소득수준에 따른 특별한 경향성은 없으며 직업의 경우 화이트 칼라의 경우 노인만을 위한 영화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는 응답이 좀 높은 편이다.

한편 노년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으로는 43.0%가 모든 연령대가 생활하기 편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은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같은 주거 지역을 조성한다로 29.2%,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가 25.5%이다. 이러한 응답은 주거환경과 관련해서는 주거환경의 고령친화성 제고가 노인만을 위한 주거지역 조성보다 선호도가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교통환경에 비하여 주거환경에 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성별로 비교해보면 남성에 비하여 여성은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같은 주거지역조성을 선호하는 편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고령친화적인 주거환경과 교통환경 조성을 선호하고 있다. 또한 이혼·별거·사별자는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에 대한 선호도가 낮다. 반면 가구형태별로는 부부가구로 생활하는 응답자의 경우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소득수준별로는 특별한 경향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44 연령통합의 현황과 과제

〈표 27〉 노년기의 활발한 활동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

(단위 :%, 명)

구분	노인만을 위한 영화관, 헬스클럽 등을 만든다	영화관, 헬스클럽등을 노인도 이용하기 편하게 만든다	노인이 좋아할만한 내용의 영화나 운동 프로그램을 만든다	기타	계 (명) ¹⁾
전체	4.4	27.9	63.4	4.2	100.0 (990)
지역					
광역시	4.1	30.1	61.4	4.4	100.0 (459)
도	4.7	26.0	65.2	4.1	100.0 (531)
성별					
남성	5.1	28.0	61.8	5.1	100.0 (490)
여성	3.8	27.8	65.0	3.4	100.0 (500)
연령					
30대	5.9	28.9	62.8	2.4	100.0 (253)
40대	2.6	29.4	64.0	4.0	100.0 (272)
50대	4.1	29.8	61.6	4.5	100.0 (242)
60대	6.8	27.1	57.9	8.3	100.0 (133)
70대	3.3	16.7	76.7	3.3	100.0 (90)
결혼상태					
미혼	4.0	31.3	61.3	3.3	100.0 (150)
유배우	4.6	27.1	64.1	4.1	100.0 (775)
이혼, 별거, 사별	3.1	29.2	60.0	7.7	100.0 (65)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4.4	28.1	63.4	4.2	100.0 (666)
부부가구	4.6	27.1	64.2	4.1	100.0 (218)
1인가구	4.1	28.9	61.9	5.2	100.0 (97)
직업					
화이트칼라	5.6	28.4	63.3	2.7	100.0 (409)
자영업	3.7	27.8	61.4	7.1	100.0 (241)
기타 직업	1.9	29.2	64.3	4.5	100.0 (154)
무직	4.8	25.8	65.6	3.8	100.0 (186)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4.2	26.3	64.4	5.1	100.0 (118)
100-200만원 미만	3.5	32.7	60.8	2.9	100.0 (171)
200-300만원 미만	7.8	24.2	65.3	2.7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2.5	34.2	58.9	4.4	100.0 (158)
400-500만원 미만	2.9	30.9	61.8	4.4	100.0 (136)
500만원 이상	4.2	22.9	66.9	6.0	100.0 (166)

주: 1) 무응답은 제외하였음.

〈표 28〉 노년기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노력

(단위 : %, 명)

구분	노인을 위한 실버타운과 같은 주거 지역을 조성한다	모든 연령대가 생활하기 편한 주택을 건축한다	노인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	기타 ¹⁾	계 (명)
전체	29.2	43.0	25.5	2.3	100.0 (1,000)
지역					
광역시	30.5	42.0	25.3	2.2	100.0 (462)
도	28.1	43.9	25.7	2.4	100.0 (538)
성별					
남성	26.4	45.2	25.4	3.0	100.0 (496)
여성	31.9	40.9	25.6	1.6	100.0 (504)
연령					
30대	22.9	47.4	27.7	2.0	100.0 (253)
40대	33.6	43.1	20.4	2.9	100.0 (274)
50대	32.8	44.7	20.5	2.0	100.0 (244)
60대	31.6	36.8	30.9	0.7	100.0 (136)
70대	20.4	35.5	39.8	4.3	100.0 (93)
결혼상태					
미혼	22.7	50.0	25.3	2.0	100.0 (150)
유배우	31.6	41.9	24.3	2.2	100.0 (782)
이혼, 별거, 사별	16.2	39.7	39.7	4.4	100.0 (68)
가구형태					
자녀동거가구	28.9	46.2	22.5	2.4	100.0 (671)
부부가구	33.5	35.3	29.9	1.4	100.0 (221)
1인가구	21.2	40.4	35.4	3.0	100.0 (99)
직업					
화이트칼라	29.0	45.1	23.9	2.0	100.0 (410)
자영업	30.6	46.5	19.6	3.3	100.0 (245)
기타 직업	26.3	42.3	30.1	1.3	100.0 (156)
무직	30.2	34.4	32.8	2.6	100.0 (189)
월평균소득					
100만원 이하	24.8	35.5	38.0	1.7	100.0 (121)
100-200만원 미만	23.7	48.0	26.0	2.3	100.0 (173)
200-300만원 미만	30.1	39.3	28.8	1.8	100.0 (219)
300-400만원 미만	33.1	39.4	23.8	3.8	100.0 (160)
400-500만원 미만	32.6	44.9	21.0	1.4	100.0 (138)
500만원 이상	30.7	51.8	16.3	1.2	100.0 (166)

주: 1) 기타는 모름, 없음, 개인적 노력이라는 응답을 포함한 결과임.

제4절 종합

본 조사결과 나타난 주요 결과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의 60세나 65세를 노년기에 진입하는 연령으로 보던 사회적 분위기에 변화가 뚜렷해지고 있다. 70대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이 60%이며 나이와 상관없다는 응답도 소수이지만 존재하고 있다. 한편, 은퇴 연령은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과 같거나 낮다. 즉 이는 70세까지는 일을 하고 70대 이후 퇴직한 상태로 '노인'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연령규범이 형성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가치관의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아직도 대다수가 부모와 자녀에 대한 강한 부양의식을 갖고 있다. 적어도 자녀가 노부모가 빈곤하지는 않게 생활하게 하는 책임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자녀에 대한 부양 책임도 강하게 갖고 있어서 성년이 아니라 학업, 결혼 또는 취업할 때 까지는 자녀를 부양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 부양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이 클 것임을 유추해볼 수 있다.

셋째, 노인의 사회적 기여나 가족내 기여에 대하여 인지하고 있어 의존적인 존재로서의 노인에 대한 스트레오 타입은 많이 없어졌음을 볼 수 있다. 노인의 기여 등 노인의 기여에 대한 또한 노인이 자기개발을 계속하거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매우 긍정적이다. 이러한 변화가 인구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생산적 노화의 강조라는 맥락에서 발생한 사회적 당위성 때문인지 아니면 기존의 노인에 대한 편견이 없어져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실제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있다는 응답에 비하여 노인세대와 비노인세대간의 갈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 비율이 훨씬 높다. 이는 잠재되어 있는 갈등이 비노인세대에 비하여 사회적 영향력이 적은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표출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많은 응답자가 세대간 갈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생각과 가치관의 차이로 보는 응답이 높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연령이 높은 경우는 세대간 갈등이 다른 세대를 잘 모르는 것에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과 대조되는 현상이다.

다섯째, 고령친화적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물리적 환경보다는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며, 물리적 환경도 노인을 분리한

분리적 접근보다는 모든 연령층이 함께할 수 있는 통합적 접근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가 갖는 정책적인 함의를 정리해보면 첫째, 건강한 노년기의 증대로 인하여 노인으로 규정하는 연령기준도 높아지고 은퇴를 늦게 하려는 경향이 발견된다. 사회구성원의 생각과 노년기 연령규범도 이러한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일 또는 자원봉사 활동, 자기 개발 등으로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자신의 노후, 노부모에 대한 부양, 자녀에 대한 부양 등 많은 부양부담을 갖고 있는 사회구성원이 합리적이고도 균형잡힌 맞춤형의 노후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및 노후설계관련 서비스의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과 비노인 세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과거와는 달리 향후 제한된 사회적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세대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세대간의 가치관의 차이로 인하여 다른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갈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노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이어질 수도 있다. 따라서 제도 개선시 각 세대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제도의 장기적인 목표와 지향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요구된다. 더불어 각 세대가 다른 세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대 공동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연령통합적인 문화적·물리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 문화적 콘텐츠 개발에 있어서는 비노인 세대 중심에서 벗어나 노인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물리적 환경은 노인만을 위한 분리된 환경이 아닌 연령통합적인 방향으로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화조사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한정된 항목만을 조사할 수 밖에 없었던 한계가 있었고, 따라서 좀 더 심층적인 이해와 현황 파악에는 제한이 있었다. 향후 좀 더 포괄적이고 심층적인 자료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옥 (2002). 「한 형태로서의 노인차별주의:사회복지적 대응과 함의」, 『사회복지정책』 제14집, 97~118쪽.
- ____ (2011). 「한국과 미국 대학생의 노인대 대한 지식 및 태도 연구」, 『한국노년학』 31(3). 505~526쪽.
- 김주현 (2011). 통합적 사회 구축을 위한 적극적 연령주의의 정립
- 송기민·최호영(2010). 「고령화 시대 노인 연령규범에 대한 현행 법제적 고찰」, 『법과 정책연구』 10(3). 989~1008쪽.
- 원영희 (2004). 「노인편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노년학』 24(1). 187~206쪽.
- 이금룡(2004). 「연령별 노인에 대한 태도 비교를 통한 세대통합 프로그램의 전략적 방안 모색」, 『노인복지연구』 26(겨울호). 143~164쪽.
- ____(2005). 「한국사회의 노년기 연령규범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6(1). 143~159쪽.
- 이삼식 외 (2010). 『향후 5년간 추진할 저출산고령사회 핵심 연구과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상철 외 (2011).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 서울복지재단.
- 이수연·최인희·김인순 (2010). 『남녀노인의 세대갈등 현황과 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연구보고서』.
- 정경희 (2001). 「인구고령화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62호. 31-40쪽.
- ____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문화』, 제7호. 11~26쪽.
- 정경희·한경혜·김정석·임정기 (2006a).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경희·이윤경·오영희·김상철·노명우·박신영·설재훈·방효정 (2006b), 『고령화수준에 따른 고령친화적 지역사회발전모델 개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최성재(2009). 「수도권 지역 중년기 이후 세대의 노후생활 인식과 노인에 대한 인식」, 『한국노년학』 29(1). 329~352쪽.
- 한정란 (2002). 세대간 통합을 위한 교육노년학적 논의: 세대 공동체 교육. 2002년 한국청소년학회·한국노년학회 공동학술대회, 37-68.
- Riley, M. W. & Riley, J. W. (2000). Age Integration: Conceptu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e Gerontologist 40(3), 266 - 270.
- Uhlenberg, P. (2000). Introduction: Why Study Age Integration? The Gerontologist.

40(3), 261-266.

Uhlenberg, P. (2009). Children in an aging society. *Journal of Gerontology: Social Sciences* 64B(4), 489 - 496.

WHO (2007). *Global Age-friendly Cities: A guide*.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새로운 관점:
Ageism(연령주의)

김주현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교수

I. 서론

인간역사에서 성, 인종, 계급 등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의 변화가 인간생활 변화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다. 성에 따라 이루어 졌던 사회적 차별은 sexism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여성지위의 변화가 가능했다. 인종에 따라 이루어 졌던 사회적 차별 또한 racism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해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생활의 측면에서 변화의 동력으로 작용하였다. 그렇다면 한 사회의 연령주의의 양상은 그 사회 노인 생활을 대변한다고 하겠다. 그 사회의 제도적 장치가 노인들의 삶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제한하며 또 위협하고 있는지, 또는 사회가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이들을 어떻게 사회의 중심부에서부터 고립시키고 있는가 하는 사회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노인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다(김주현, 2009).

한국 사회의 노인들에 대한 국제적 시각은 매우 이중적이다. 한국의 노년은 지금까지 경로효친이라는 전통적이고 견고한 사회적 가치에 둘러싸여 구성되어 왔다. 가부장제의 중요한 사회통제원리로서 작용해 온 유교적 효와 경로사상은 노인 에 대한 사회적 공경과 부양의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했다. 그리고 이러한 가치는 노인을 연장자로서 존경해야 하는 존재로 인식시켰다. 이러한 영향으로 노인 에 대한 정서적, 가족적 차원에서 한국은 외부로부터 노년의 사회적 상황이 긍정적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사회 내부에서는 그와 같은 전통적 가치체계에 공감하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며, 현실적으로도 경로효친 사상으로 한국 노인들의 사회적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국 노인의 자살률이 세계1위라는 사실이나, OECD국가 중 상대적 노인 빈곤율이 45%로 1위이며, 한국 노인이 매우 고령까지 일을 하고 있다는 발표¹⁾는 한국 노년의 사회적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측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1) 2005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고령노동인구 보고서(ageing synthesis)'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각 회원국 40세 이상 국민의 실제 은퇴연령을 조사한 결과 한국은 70세로, 75세에 육박하는 멕시코를 제외하면 노인들이 가장 늦게까지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정도로 빠른 고령화 경향은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인구고령화가 사회적 생산성의 감소(경제 위기), 복지, 의료비의 부담 (사회보장제도의 재정 및 정당성의 위기) 등을 초래한다고 하는 고령화 위기론에 근거한다(김미숙, 2003). 고령화 위기론에 의하면, 노인인구집단은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이전급여를 수급 받아야 하는 의존적 존재이며, 이로 인해 사회적 부양비를 올리고, 공적 연금이나 의료보험 등 사회적 부담을 발생시키는 존재이다. 고령화위기론은 이미 고령화로 인한 실제적인 경제적 파장을 과장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하다고 비판 받고 있으나(Jackson, 1998; 정경희, 한경혜, 김정석, 임정기, 2006) 한국사회에서는 여전히 중요한 노년담론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위해서 기존의 노년을 바라보는 윤리적이고 당위적 가치의 한계를 인정한다면,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을 이해하기 위해 어떤 분석틀을 주목해 볼 수 있을까. 근대화에 따른 노인의 사회적 지위 변화, 복지국가와 은퇴 제도의 등장에 따른 노년기의 사회적 재구성, 그리고 생애발달단계의 변화에 따른 노인역할과 연대기적 연령의 괴리 등에 대한 노년기 논의들을 통해 연령주의가 등장하고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관계로 형성되는 배경이 나타난다(김주현, 2009). 노년기 변화에 대한 이 핵심 논의들은 서구의 논의들이지만 한국적 상황에서도 설득력이 있으므로 고령사회를 조명하는 관점으로서 연령주의의 한국 상황에의 적용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한국사회 노인에 대한 많은 연구에서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인식 및 태도, 사회적 지위 하락, 차별을 지적하여 왔다(김주현, 2007; 이윤경, 2007; 노공균·조소영·신동숙·이태훈, 1991). 노동시장에서는 임금과 노동지위에서 연령차별이 나타나며, 노인에 대한 부양부담과 의존성, 부정적 감정들이 노인과의 갈등으로 나타나고(정기원, 2001), 학대상황에 까지 이를 수 있는 불안한 가족관계가 보고되고 있다(최해경, 2004). 그리고 사회·문화적으로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는 현실 등을 연령주의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 듦(연령)을 이유로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차별인 연령주의(Ageism)는 노년의 사회적 이해

방식으로서, 노인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 관념들이 노인에 대한 차별과 억압으로 이어져서 구조적 관계로 굳어지고(김주현, 2009), 한국사회에서 연령주의가 노년기의 일과 가족 그리고 사회·문화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정경희, 2004; 박경숙, 2004).

본 발표는 두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는 연령주의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러한 연령주의 논의가 사회적으로 등장하고 전개되는 맥락을 미국, 일본의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함의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연령주의 논의를 진단하고자 한다. 나아가 현재 3국의 주요한 노년담론과 연령주의의 관련성을 살펴본다. 두 번째는 한국 사회의 노년기에 연령주의가 구조적 관계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경험적인 연구로서, 연령주의 실태를 양적 자료로서 측정하고 나아가 국가비교를 통해서 현재 한국의 고령사회문제를 진단하는 관점으로 활용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2. 이론적 배경 - 연령주의(Ageism)

연령주의(Ageism)란 용어는 1969년 무렵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IA) 초대 소장이었던 로버트 버틀리에 의해 최초로 사용되어진 이후, 많은 연구자들을 통해 논의되었다. 버틀러는 나이드은 사람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정형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을 연령주의라 하였으며(Butler, 1987), 연령주의를 측정하려고 시도하였던 Palmore(1999)는 노인집단에 대한 부정적 또는 긍정적 편견이나 차별을 일컫는 것이라 하였다. Bodily(1991)는 연령주의가 연대순에 따른 연령개념화에 의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나타나는 사건 또는 특성, 능력, 한계의 속성이라고 정의하였고, Bytheway(1995)는 연령주의에 노인은 추하고 고집 세고 비생산적이라는 것과 같은 편견과 젊음이 늙음보다 낫다는 등의 태도가 포함된다고 보았다. 또한 연령주의는 연대기적 연령을 바탕으로 사회가 특정의 연령집단으로 부터 그 사회의 기회와 자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 버리는 장치를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성차별주의나 인종차별주의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한다고 주장하였다.

연령, 성 그리고 인종은 “자연적 범주(natural category)”라고 불려진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적 범주도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되고 해석된다. 19세기에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인종차별과 20세기 중반부터 수많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여성차별에 이어 제3의 ‘ism’으로 주목 받고 있다(Butler, 1987; 原田謙, 2011). 특히 전자의 차별현상들은 특정집단에 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나, 연령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령주의는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존재한다.

한편, 연령주의를 직접적 차별 태도나 편견 행위뿐만 아니라 구조화된 관계로 접근하려는 연구들이 있는데, Glanda Law(1995)는 권력관계에서 연령주의를 파악한다. 인종주의나 성차별주의처럼, 연령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편견과 억압의 유형으로 구조화하는 것이라고 연령주의를 파악하였다. 연령주의가 편견의 한 형태이고, 그것을 통해 노인들을 억압의 대상으로 만들며 그들을 제한하고, 사회적으로 연령차별적 의식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현재 노인들에 대한 차별은 여성들이 겪었던 차별처럼 사회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연령차별이란 어떤 연령집단이 다른 연령집단보다도 우월하다거나 혹은 열등하다는 신념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념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어진다. 따라서 연령주의는 어떤 형태로든 권력자들에 의해서 제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한 사회의 권력집단이 사회 내 구조적 불평등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노인들을 노동시장에서 밀어 내는 것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판단되는 경우 노인들은 그 사회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는 것이다.

나아가 연령주의는 단순히 억압의 대상이 되는 노인들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연령 인식을 주조하며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연령주의는 현재 노년의 생활세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로 은퇴, 수입보장, 의료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제도적, 정책적 대비에 있어서 그 사회의 연령주의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연령주의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노인들의 자존감의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 등으로 개인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에 의해 노인들의 생산성과 창의

성을 무시하는 것 등의 경제적 비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노인들의 지혜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무시하는 것 등의 사회·문화적 비용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에 대한 이해와 실증을 위해서 연령주의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필요하다. 그것이 현재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길이다.

3. 연령주의 논의의 사회적 등장과 전개 : 미국, 일본, 한국²⁾

(1) 미국의 연령주의(Ageism)의 등장과 전개

산업화의 진행과 함께, 1950년대에 미국 사회에서는 civil right movement가 일어났고, 나이로 인한 고용시장에서의 차별이 인종 그리고 성으로 인한 차별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이 생겼다. 더욱이 젊음(youth) 중심의 문화의 발달과 함께 노인 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 만연하게 된 것에 대한 비판 또한 생겨났다. 즉 연령주의(Ageism)의 개념은 인권평등과 사회참가를 목적으로 하는 공민권(公民權)운동이 융성하는 가운데 나타나, 정책과 실천에 영향을 미쳤다. 인종차별, 성차별을 비판하는 운동이 고양되고 이에 대한 일련의 달성을 이룬 서구에서 공민권운동 하에서 더욱 더 해소되어야 하는 새로운 영역으로 연령 또는 노화가 이의신청의 대상으로서 문제화되어 그것을 해소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Nelson, 2009).

연령주의에 대한 저항은 세 가지 영역에서 전개되었다. 1) 정치, 경제적 측면 : 고령자의 고용문제가 차별의 쟁점이 되었다(1967년 연령차별금지법). 2) 의료, 개호의 측면(복지) : 노인에 대한 대우, 처우에 중점을 두고 의료, 개호문제에 있어서 노인에의 관점으로 다루는 것이 쟁점이 되었다. 3) 사회문화적 측면 : 늙음의 추함 또는 움직임의 둔함을 노인이 가진 특징으로 강조하는 노인의 표상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결국 연령주의는 서구자본주의 사회가 업적이나 능력을 중심으로 하는 가치관을 강요해 온 것에 대한 비판이고, 노인이 스스로가 노인이 되는 것을 거부하

2) 이 장은 본 연구자의 논문 "The Comparison of Strategies Combating Ageism among Korea, Japan, and US"(2012, Korean Journal of Sociology 46(3) : 93-113)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고 은폐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대가 형성되어 온 것에 대한 지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연령주의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축으로 전개 되었다. 하나는 반연령주의를 표방한 고령자운동이다. 미국에서는 연령주의에 대한 사회적 대응으로 적극적인 고령자 운동을 통해 연령주의 비판활동이 전개되었다. 1960년대에 다양한 마이너리티 그룹들을 향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비판이 일어나기 시작 하면서, 노인에 대해 다양성을 무시한 편견과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해서도 비판과 사회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Gray panthers 와 AARP 가 주축이 되어 고용시장에서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 강제 퇴직 제도, 그리고 노인 에 대한 부정적인 편견들에 대해 비판하였다. 미국의 노인 단체들은 정책 형성 발 전에 있어서 노인들의 이익을 옹호하고자 하였고, 이미 형성된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보호하기 위해 활동하였다. 1958년 Ethel Percy Andrus는 the 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 를 설립했고, 급속한 성장을 보인 AARP는 정치적인 파워를 가지게 됨으로써 나이로 인한 차별을 반대하기 위한 정책의 설립을 도왔다 (Macnicol, 2006). 차별에 대한 비판을 축으로 하는 노인운동에서 80년대 이후 정보나 케어의 서비스제공으로 전환되고 있다.

미국의 The Leadership Council of Aging Organization (LCAO) 는 미국 내에서 전국 규모로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활동하는 non-profit 조직들을 대표하는 연립 (coalition) 조직이다. 현재 총 66개의 다양한 조직들이 LCAO에 가입되어 있고,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LCAO, 2010). 대표적인 조직인 AARP는 66개의 조직들 중 가장 큰 규모이고, 정책 활동에서도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쳐 왔다. AARP의 영향력은 다른 조직들의 영향력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평가되어 왔다. LCAO의 임무는 미국의 노인들의 안녕을 추구하고, 정책 형성에 있어서 노인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데, 특히, 연령주의와 관련하여서도 임무강령(mission statement)을 명시했다(“working to ensure that no older person is a victim of discrimination based on age, gender, race, or ethnic origin”).

그 외에 Gray Panthers는 1970년에 Maggie Kuhn에 의해 만들어진 조직으

로 모든 사람들의 사회 경제적 정의를 위해 여러 활동을 펼쳐왔다. 연령주의와 관련해서는 AARP와 다르게 노인들에 대한 차별 혹은 편견 뿐 만 아니라, 어느 연령대에 속해 있든지, 나이 때문에 겪는 차별과 편견으로 연령주의를 정의하였다. Gray Panthers에 따르면, 연령주의는 개인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고, 특히 노인들에게는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대처해야 하는데, 나이로 인한 차별의 사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라고 밝혔다. 예를 들면, 1997년부터 2007년 사이에 ADEA를 바탕으로 보고된 불만 신고가 21%나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Gray Panthers는 연령주의로 인해 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이 유지되고, 대중매체에서 나타나는 노인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고 논의하며, 연령주의를 없애기 위해 사회에 존재하는 노화에 대한 잘못된 인식들을 고쳐나가고, 세대간의 교류를 통해 다른 연령 그룹에 대한 이해를 넓혀 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하는 조직이다 (Gray Panthers, 2009). Gray Panthers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사회 경제적인 정의를 구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의 활동뿐만 아니라, United Nations (UN)에 속한 NGO기관으로서 UN에서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의 ageism, sexism, and racism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성노인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을 없애기 위해 UN이 여성노인의 권리에 대한 일반권고안(General Recommendation)을 받아들일 것을 호소해왔다(Gray Panthers, 2009).

마지막으로 참고할 만한 조직은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ILC)는 1990년에 Robert Butler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 비정치 단체이다(ILC, 2009). 특히, ILC는 “combat ageism”을 주요 목표들 중 하나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위해 연령주의 다양한 형태들을 조사해 알림으로써, 공공 기관 뿐 만 아니라 사적 기관들이 노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차별적인 서비스와 정책들을 고쳐나 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도에 “Ageism in America”을 제목으로 한, 미국의 연령주의 실태와 연령주의에 맞서기 위한 여러 대책들을 제시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ILC).

또 다른 축으로 미국 정부의 연령주의 대책으로서 법적 제도적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정부의 제도적 변화에는 특히 사회 복지적 측면에서의 내용을 포함한다. 복지정책에 대한 논의가 점차적으로 이뤄지면서 이러한 취약한 집단으로서의 노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노인들이 과거에는 사회에 기여를 했다는 인정과 함께 노인들이 복지정책의 대상으로서 마땅하다('deserving')는 담론을 만들어 냈다(Torres-Gil & Putnam, 2004). 결국, 노인들은 젊었을 때 사회에 기여를 했지만, 가난하고, 병들고, 신체적인 기능이 떨어져 의존적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되어 졌다. 이러한 인식은 미국의 사회경제적인 상황과 맞물려, 사회보장제도를 합법화 하는데 도움을 줬을 뿐 아니라, 이후 1970년대까지의 다양한 노인들을 위한 복지정책들의 구축을 부추겼다(Binstock, 2005). 그런데 이러한 변화가 노인들을 위한 보편적인 복지정책을 구축하는데 기여하였지만, 한편으로는 노인들의 다양성을 무시한 채, 하나같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야 하는 의존적인 취약한 그룹으로서 더욱 여겨지는 결과를 낳았다(Binstock, 2005)는 비판을 할 수 있다.

산업화와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 노동능력이 있는 연령집단과 그렇지 못한 연령집단을 구분하고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노년기'가 공식적으로 구분되는 생애단계가 되었다. 또한 자연스런 과정으로서의 노화가 20세기에 들어와 쇠퇴, 허약함, 퇴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새로운 단계로의 구분은 노령보험 등의 사회보장의 도입이라고 하는 사회적 움직임과 관계가 있다. 이에 대해 노동시장으로 부터의 분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기제로서 연령주의가 강화되었다는 지적도 있다(Hummert et al. 1994; Law, 1995). 근로능력이라는 기준을 통해 노년의 사회적 無用을 강조하여 부정적 존재로 인식되도록 하였으며 연령주의는 노년기의 훼손을 가져왔다는 것이다(Haraven, 1995).

고용시장에서의 나이로 인한 차별과 노인학대 문제는, 미국에서 연령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노인들에게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로서 지적되어 왔고, 정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먼저 고용시장에서의 나이로 인한 차별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연령차별금지법(1967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ADEA)의 제정과 변화를 통해, 노인학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the Elder Justice Act 2010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미국의 센서스 데이터를 살펴봤을 때, 65세 이상의 남자들의 고용율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이 1890년부터 1970년 사이에 점차적으로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1890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중 68.3%가 고용되어 있었지만, 1970년도에는 24.8% 만이 고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인구의 고용율이 줄어든 것에 대한 이유는 수요와 공급의 측면에서 논의되어져 왔다. 먼저, 수요 측면에서,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그로 인해 고용시장에서 생겨난 젊은 노동력에 대한 선호도가 노인 인구의 고용율을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공급의 측면에서는 노인들이 어느 정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개인적으로 노후의 레저활동을 위해 퇴직하려는 성향을 보인다는 것이다. 1935년도의 Social Security Act의 성립 또한 노인들의 퇴직 결정을 영향을 끼친다고 논의되어 왔다 (Macnicol, 2006). 그러나 점차 퇴직이 단순히 노인의 개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노동시장의 일자리 한계성과 강제퇴직 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주장이 강해졌다. 결국, 이러한 공민권 운동하의 노인에 대한 정의와 퇴직에 대한 사회구조적 요인에 대한 고려가 1967년도 고용에서의 연령차별 금지법의 제정을 도왔다. ADEA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제정되었다.³⁾

1978년, ADEA는 보호 대상을 70세까지 확대하였고, 1986년에는 40세 이상의 모든 노동자에 대한 연령차별을 금지하였고 대부분의 직장에서의 강제퇴직제 또한 금지하였다. 노동부 (the Department of Labor)가 ADEA를 enforcing 하고 monitoring 했었지만, 1979년부터는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EEOC, the federal government agency)가 대신에 역할을 하기 시작하였다. EEOC는 노동시장에서 나이로 인해 차별을 겪은 피해자가 합의나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사람들이 차별을 인식하고 챌린지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2005년에 Smith V. City of Jackson, Mississippi 케이스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은 직장 내의 처우나 정책들이 표면적으로는 차별로 보이지 않더라도, 고령노동자들에게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차별이

3) (1) to promote the employment of older employers; (2) to prohibit 'arbitrary'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nd (3) to help employers and workers find ways of solving problems arising from the impact of age on employment (Macnicol, 2006).

라고 여겨질 수 있다고 판정을 내렸다(Dale, 2005).

한편 노인학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고용에서의 노인 차별 이슈만큼 활발하지 못하였다. 1979년 노인학대 문제가 처음으로 국회에 보고되었고, 그 이후 노인 학대 이슈에 대한 여러 차례 언급이 있었지만, 노인학대 문제가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관심을 받고 노인학대 예방과 노인학대의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필요성이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에 들어서이다. Senators John Breaux and Orrin Hatch 는 2003년에 The Elder Justice Act (S. 333)를 제안하였고, 같은 해에 The Elder Justice Act를 옹호하기 위해 창립된 The Elder Justice Coalition (EJC)의 끊임없는 활동을 통해 마침내 2010년 연방 정부 법으로 제정되었다. The Elder Justice Act 2010은 노인학대를 막기 위한 최초의 연방정부 선상의 정책이고, 이는 4년 동안 \$777 million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EJC, 2011).

(2) 일본의 연령주의(Ageism)의 수용과 전개

전후 근대화가 진행되면서 일본은 다양한 사회변화가 전개되었다. 전후 헌법과 민법의 개정으로 부녀자의 참정권이 인정되었으며, 일본 고유의 <가족제>에서 벗어나 여성이 사회적 구성원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정치, 경제, 교육 등의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 과정에서 일본 사회는 시민권의 확대가 논의되었는데, 고령자의 문제는 아직 사회 전체적으로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지는 않았다. 그 후 1963년 노인복지법이 성립 시행되고, 1964년 <경로의 날>이 제정되면서, 고령자의 문제가 사회적 테마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Komatsu Hideo, 2002). 고령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제기된 방식은 급속한 일본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지역사회를 지탱한 고령자의 이미지에 의해서 미국에서와 같은 연령주의에서 보여지는 고령자 차별로서의 문제제기와는 차이가 있었다. 다만, 근대사회의 업적주의나 효율주의의 경향에 따라 고령자의 문제를 보는 시각이 나타나기는 하였다. 다시 말해, 근대사회의 경제윤리로서 인구구성변화(노인인구의 증가)의 시점으로부터 고령자의 문제를 위치 지움으로써 미국의 연령주의와 유사한 형태로서 노인문제를 조명하는 시각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더불어 일본도 사회발전 과정

에서 가족기능 중 약자에 대한 돌봄이나 보호의 기능이 감퇴하면서 노인 부양이나 개호의 문제가 사회화되면서 윤리적인 문제로서 고령자의 문제가 논의되었다(森幹郎, 1978).

그러다가 1970년대 들어와 일본의 고도성장이 안정기에 들어서면서, 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되어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0%를 넘어서게 되었다. 고령인구에 대한 사회적 위기의식·문제화와 함께, <시대에 뒤떨어진> 또는 <낡아버린 소모품>으로서 고령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것은 비노인층인 청장년층에게 노인인구의 증가가 사회경제적 부담으로 인식되는 시기가 되었다는 것이다(Komatsu Hideo, 2002). '효행'에서 '의무'로 나아가 '부담'으로 고령자를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다. 경제효율의 관점에서 보면 고령자들은 부담을 증가시키는 존재이며 개호를 필요로 하는 고령자에 대한 경원, 기피 그리고 나아가 사회적 배제로 이어지는 부정적 연령주의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杉井濶子, 2007). 이후 이러한 일본 사회의 경향에 대해서 지적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노인에 대한 경시의식, 무관심을 지적하고, 고령자를 배제의 대상으로 보는 시각을 지적하기 시작하였다(副田義也, 1997).

일본의 연령주의 논의는 서구에 비해서 조금 늦어서 1980년대 미국의 선행 연구를 도입한 연구가 발표되면서 나타났다. 그러나 고령자 문제로서 사회적 영향을 미친 것은 "르브노인병동"으로 대표되는 언론의 보고였다(大熊 一夫 1988). 그런데 이것은 노인 차별의 문제로서보다 노인 관련 시설 또는 제도의 문제로 이해되었다(辻正二, 2000). 따라서 연령주의에 대한 비판으로서 본격적인 차별논의는 거의 없었다(副田義也 1997). 1990년대까지 연령주의를 전면적으로 문제화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杉井濶子, 2007). 물론 고령자의 생활환경을 문제화하는 시선을 통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었는데 이것은 차별의 문제라고 하는 시선은 약하고 고령자에의 시선도 신체의 노화라고 하는 측면이 강조되어 정책적으로 연령주의의 문제가 아니라 노인생활에 관련된 '보장'의 문제로서 이해되었다. 이러한 고령자의 생활보장에 대한 사회적 강조는 질병이나 장애, 치매 등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 공동체의 책임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구와 다른 차별성이 나타난다.

일본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시각(Ageism)의 사회적 등장과 확산은 전후 고도경제성장의 시기를 거치며 전개된 사회의 변화와 맞물린다. 고도성장의 시기에는 고령자를 포함한 전체 사회구성원이 산업의 역군으로 인식되었으나 점차 경제가 안정되고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해지면서 생산성의 관점에서 불리한 고령자는 사회적 구성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부담의 존재가 되었다. 더구나 가족구조와 기능의 변화로 고령자에 대한 부양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사회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해결하는 과정에 고령자의 권리측면이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것은 여성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논의되면서 남성집단에 대한 여성의 권리 확대로 진행되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고령자 집단이 권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고령자를 보호하고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적 윤리의 문제로 진행되었다는 것이 일본의 연령주의 논의의 핵심이다. 즉, 고도성장 이후 일본 경제성장의 위기에 주요한 요인으로 고령화의 문제가 인식되면서, 생산성이나 효율성 측면에서 부족한 존재로서 고령자, 사회적 부양 부담을 지우는 존재로서의 고령자의 인식이 사회적으로 퍼졌으며,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응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시각을 문제 삼는 고령자 권리의 차원에서 제기 되었다기 보다는, 그러한 부정적 시각으로 인한 사회적 약자화된 고령자들에 대해 어떻게 보호하고 그들의 생활을 보장하느냐하는 대처적 입장이 우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서구와 달리, 경로와 효가 중요한 사회적 윤리였던 일본 사회의 특성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즉 고령자에 대한 부정적 시각, 연령주의의 등장이 전통사회의 윤리로부터의 변화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보장으로서 고령자 보호와 보장이 우선됨에 따라 연령주의의 문제가 고령자의 권리로서 논의될 수 있는 지점이 줄어들었다.

일본 노인단체 활동은 미국의 노인운동단체와 달리 당사자단체 활동은 매우 적다. 일본의 가장 큰 노인운동단체로 전국노인그룹연맹회(全老連)이 있는데 주로 여가적 활동을 주로 하며, 구체적인 생활을 위한 정치적 활동은 거의 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는 '보장'에 있다. 실제 노인그룹연맹회로부터는 각종 고령자정책, 사회보장관련심의회에 대표를 파견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런 노인그룹연맹은 일정한 조직으로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것을 구동시키는 기제는 '건강' 또는 '사는 보람, 삶의 목표'에 있다고 하겠다. 전노련은 지역의 고령자가 사는 보람 또는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동료 노인들과 함께 만남을 갖고 즐거운 클럽을 만들고 사회공헌을 하는 모임을 만드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 노인 클럽 자체가 노인복지법이나 신골드플랜에 있어서 고령자의 사회 참여, 삶의 목표 대책의 추진조직으로 일익을 담당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노인 이미지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이나 '삶의 보람'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 이외 일본의 고령자 관련 사회단체인 Japan NGO Council on Ageing (JANCA)는 주요한 활동 목표는 "시니어 집단의 사회활동 촉진"에 있다. 전노련과 달리 정치적 활동도 하는데 주로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에 대하여 정치적 제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단체에서 제안하는 고령자 현장에는 존엄, 사회참가, 사회공헌, 건강과 주거 환경 조성, 사회보장제도, 생애학습이 주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또 다른 일본 고령자 관련 단체인 일본고령퇴직자단체연합도 주요한 사업 내용이 노인복지법에 기초한 사회보장 제도의 확립에 있다. 이렇듯 일본의 노인단체 활동(노인운동)은 노년의 사회적 차별에 대한 문제 해결이나 권리 찾기라기보다는, 노년기에 필요한 사회적 환경을 보장받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공헌을 하고 역할을 이어나가기 위한 기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보여진다.

한편 일본 정부의 고령자 대책의 방향은,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활력을 유지해나가기 위해서, 고령자 자신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능력과 경험을 살리고 활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기본적인 생각이다. 장래의 일본 사회에 대응한 바람직한 고령자의 모습과 상정하고 이를 위한 정책적 제도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 정부의 고령자 관련 정책 기조는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의 기본이념에 잘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최근인 2010년 일본노인백서에서 더욱 강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노인의 다양한 측면 중 노동/소득에 관한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정부가 고령자의 취업과 소득에 관해 실시한 정책과 제도의 내용은 노

동을 둘러싼 고령자에 대한 연령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측면보다는 노동능력 발휘를 위한 정책과 自助努力에 의한 노년기 소득 확보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두번째 건강과 복지의 문제의 해결을 주요한 사업으로 책정해 두고 있는데, 건강과 복지와 관련된 내용은 건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개호보험과 고령자 의료제도의 개혁을 위한 것이다. 세번째는 학습활동, 자원봉사 등 사회활동 참가를 촉진 시키는 정책에 힘을 쓰고 있다. 다만 네번째 노인의 주거환경에서 나타나는 장애(Barrier)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고안에서 연령주의와 관련된 정부의 대책 중 하나로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생활환경을 젊은 세대 위주가 아니라 보편적인(Universal) 디자인으로 조성하여 고령자들을 배려하도록 하는 정책제안들이다.

1996년부터 2009년까지 일본 정부가 고령사회관련사업에 사용한 예산 변화를 보면, 일본 정부가 고령자들의 생활 어느 부분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데, 고령자들의 취업과 소득, 건강과 복지 문제의 해결은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 고령자의 학습, 사회참가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예산은 크게 줄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内閣府. 2009).

또한 내각부가 고령화 관련하여 발표한 <“현역건강사회” Healthy active society 실현을 위한 대책> 방안이나 고령자대책을 위한 기본적 방안으로 <연령으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를 목표로>라는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일본사회에서 바라는 고령자의 모습은 생애를 걸쳐 사회성원으로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취업 뿐 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内閣府. 2008)

(3) 한국의 연령주의(ageism) 논의의 진행

한국은 아직 연령주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지 않았다. 고령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면서 노인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는 많이 늘어났으나 상대적으로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우선, 지금까지의 연령주의 연구를 살펴보면, 연령주의를 설명하고 관련 이론을 설명하는 논의가 있었고, 좀 더 나아가 연령주의를 한국의 노인문제에 적용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정도의 연구들이 진행된 실정이다. 조금 더 나아가자면 연령주의에 의한 한국 고령

화의 구체적 분석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급격한 산업화는 연령차별적인 사회와 '선택적 친화력'을 보이면서 진행되어왔으며(정경희, 2004) 이러한 경향은 노인을 사회의 부담스런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연령차별적 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주장들을 통해 노인 차별을 논하면서 연령주의적 관점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의견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진행된 노인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이, 급격히 고령화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노인의 지위가 우려될 만큼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산업화 이후 노인에 대한 전통적, 유교적 덕목의 퇴색, 나아가 사회 전반적으로 경로효친 가치관의 변화와 이러한 노인 지위의 하락을 둘러싸고 노동에서의 연령차별, 가족관계에서의 갈등과 학대, 복지 및 제도적 소외 및 낙인 그리고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 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서의 이러한 노년 담론과 연령주의의 사회적 전개 양상을 보면, 앞에서 본 미국과 일본과 같은 특징이 두드러지지 않는다. 미국사회에서처럼 연령주의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 권리의 차원에서 전개되지 않았으며, 일본사회처럼 노년기 생활 보장의 문제로 제기된 것도 아니다. 다만 노인관련 정책과 제도가 정부와 관료들을 중심으로 제안되어지고 만들어졌으며 노인들이 주체가 된 노인운동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일본과 유사하다.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과 한국의 노인 단체들이 제시하고 있는 내용들에는 노인차별에 대한 문제제기 보다는 사회적 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들과 노인들로 인한 사회문제의 방지와 해결의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최초로 결성된 노인운동단체인 전국노인단체연합회(1968)는 노인의 권익을 위한 활동보다는 애국운동,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중점을 두었다. 이후 개편된 대한노인회의 창립취지문에 보면 '우리는 선조로부터 이어 받은 미풍 양속을 후손에게 계승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며, 자신의 안일함의 추구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명량한 사회의 기수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고 되어 있어 노인집단의 권리 추구나 연령으로 인한 차별에 대한 문제해결에 대한 것은 아직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후 대한노인회는 1980년 통과된 <노인복지법>의 초안을 청원하고, 이후 노인복

지법에 경로수당 지급조항을 삽입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활동도 연령차별에 대한 문제인식에서라기 보다는 노인생활에 대한 보장의 차원의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 다른 한국노인활동으로는 1994년에 창립된 한국노년유권자연맹이 있는데 이 단체는 집회 등을 통해 정치권에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다른 단체와 차별화되었으나 활동 내용은 “노년에게 연금을 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노인복지법에 경로연금제를 포함하는 것이 주요한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여타 노인단체 활동과 비슷하다.

최근 발표된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 계획> 을 보면 1) 노인 일자리, 소득 보장, 건강, 사회참여 등에 대한 노인지원, 2) 베이비부머 세대 지원, 3)주거 교통 환경과 노인권익에 대한 사회환경조성의 세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연령주의와 관련하여 한국정부의 이들 정책을 살펴보면, 노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갖춰야 되는 요인들(생산성(일자리), 건강, 그리고 자원봉사와 같은 사회적 참여)을 증진시키는데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환경조성 부분에서 노인의 주거안정성을 추구하는 내용과 노인권익에서 학대 방지 및 예방에 대한 내용을 노인차별과 연결할 수 있다.

한국사회에서 연령주의에 대한 비판적 논의가 사회적으로 전개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 두드러진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세계 최고의 고령화 속도를 통해 향 후 한국의 인구 구조에서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연령주의(Ageism)적 관점에서 현재 한국 사회의 생산성/능력 우선주의 가치와 결합되어 연령차별이 고착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주목하지 않는다면 한국 노인의 사회적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다고 본다.

(4) 노년 담론의 현재와 연령주의(Ageism)적 주목

최근 미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안티에이징 운동을 연령주의 논의와 연결시켜 볼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안티에이징 시장은 2008년에 \$162.2 billion의 규모였고, 2013년에는 \$274.5 billion 정도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예측되었다

(BCC Research, 2009). 미국에서 안티에이징 운동은 Baby boom 세대가 나이 들어감에 따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전세계적인 증가 추세와 함께, 미국에서도 2009년까지 \$72 billion 규모의 안티에이징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이 된 바 있었다 (Business Communications Company, Inc., 2005).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이러한 안티에이징 운동의 기원에 대해 논의해왔는데, Binstock & Fishman (2010)이 다음과 같이 정리한 바 있다: 1) 젊음이 중심의 문화; 2) 과학의 발달; 3) 베이비 붐 세대와 관련한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에 대한 염려 4) 쇠퇴에 대한 두려움 5) 노화 과정의 의료화 (biomedicalization of aging) 6) 의료전문가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새로운 영역의 필요성. 안티 에이징 운동의 기원에 대한 논의들에서 연령주의가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안티에이징 운동이 역으로 연령주의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안티에이징 운동은 노인 집단에 낙인 (stigma)을 주고, 특정 노인 집단을 주변화 시킬 수 있다 (Binstock, Fishman, & Johnson, 2006). Holstein (2001-2002) 은 안티에이징 운동이 경제적으로 안티에이징 관련 소비를 하기 힘든 사회적 계층에게 또 다른 불리함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일본 사회에서의 연령주의 비판 논의는 건강하고 삶의 목표가 있는 노년이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함이 요구되기도 하고, 역으로 자기책임의 문제로서 정책의 테두리 밖으로 내버려두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에서 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보상의 문제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사회운동적 배경이 없는 가운데 노년기에 대한 자기책임 의식이라고 하는 대립적 견해가 혼재되어 있는 실정이다. 후자의 노년기에 대한 자기 책임의식은 성공적 노화 논의와 연결된다. 최근에 일본의 성공적 노화에 대한 연구는 고령자의 행동능력과 관련하여 삶의 질(Quality of Life)의 틀에 있어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柴田 博, 1996). 하지만 성공적 노화의 개념과 관련된 논의에 미치는 정도이고, 보다 나아가 생산적 개념을 통해 고령자 생활세계 내부의 다양한 차이와 긴장에 주목하는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런데 일본에서의 성공적 노화 논의를 연령주의의 비판적 논의를 통하여 살펴

보면, 산업 사회의 생산성 논리가 사회체제 속에 구축되면서 노인의 지위를 보다 긍정적으로 하는 용어로서 확대된 것이 성공적 노화의 잣대가 되는 ‘노년기의 삶의 목표, 사는 보람’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노인에게 있어 사회와 공동체에 공헌하는 것이야말로 노년의 ‘삶의 목표, 사는 보람’이라고 하는 통치의 기제가 심화되었으며 동시에 그러한 사회공헌이 불가능한 노인은 무시되고 은폐되며 배제될 가능성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기 위한 연대적 기반을 일본 고령자 운동은 가지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는 개인의 문제로서 대처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는 비판을 해볼 수 있다. 이러한 비판은 한국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전개를 한국적 상황에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으며 이점에서 향후 통합적 연령주의의 함의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한국 사회에서는 노인들에 대한 연령주의적 사회적 논의와 관심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최근 들어 연령분리적 사회구성원리로는 사회의 지속적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이 일어났고, 문제 해결적 차원에서 제기된 것이 바람직한 노년의 모습으로 ‘성공적 노화’의 개념이다. 2000년대 이후 수명연장과 노인인구의 증가의 세계적 추세 속에서 한국에도 서구의 성공적 노화 모델이 소개되었으며, 마스크를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인의 모습이 강조되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노인집단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적인 사회구성원화하는 것이 중요한 아젠다가 되고 있다.

‘성공적 노화’ 담론은 연령통합적 사회구성원리로서의 제안이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이것이 제기된 것이 노인으로부터의 욕구에 의한 변화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필요성 때문에 제시된 변화라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회구성원의 가치를 근로자의 역할에서 찾는 생산성 위주의 사회에서는 교육-노동-은퇴 라는 생애단계에서 노동의 단계를 가장 중요시하며 이를 생애단계에서 확장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실리게 된다. 현재 사회적 생산성에 대한 정책 방향, 마케팅 의제, 안티에이징 담론을 통해, 신체적 기능이나 활동 능력 등을 강조하는 성공적 노화의 담론은 노년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강력한 문화규범으로 발전하고 있다. 성공적 노화 모델이라고 하는 특정 노인의 상태를 표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준에 미달되는 노인들은 주변화되고 이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강화된다. 특히 신체적 건강, 기능적 능력, 독립성으로 구성된 성공적 노화의 요소를 갖추지 못하는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노인들의 경우는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긍정적 기준에서 벗어난 특별 집단으로서 사회복지의 지원대상으로 차별화된다.

또한 노인의 현재의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성공적 노화 모델은 생애과정의 맥락에서의 노인 집단의 '기여'를 인정받지 못하게 하고 나이와 일에 기초한 불평등을 결합시켜서 노년기의 종속적 지위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Moody, 2001). 노년기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성공적 담론은 인간발달의 필연적 과정인 퇴화, 의존, 죽음 등에 대한 성찰을 어렵게 하고, 독립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는 노년기 의존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고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한다. 이것은 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인 연령주의를 더욱 강화시킨다.

더 나아가 성공적 노화모델이 개인의 책임을 강조함으로써 사회구조적 측면을 간과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비판점이 된다. 노인의 삶과 사회구조는 상호작용하며 성공적 노화의 가능성은 구조적인 상황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노인의 차별적 상황이 개별적이고 계층화된 측면으로 해석될 때 연령주의가 사회적 차별의 해결논리로 발전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공적 노화가 개인에 의한 것이라는 시각은 노년의 불평등을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하는데 제약이 된다.

이것은 일반적인 노화의 특성이 사회적 편견과 부정적 스테레오타입을 통해 연령주의의 내용이 되는 것에서 나아가, 성공적 노화 논의는 특정 기준에 못 미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부정적 평가와 연결되어 성공적 노화를 하지 못한 노인들이라는 보다 표적화된 대상에 대한 또 다른 연령차별적 기제가 될 수 있는 점에서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연령주의 관점에서의 노년의 제측면

(1) 한국 Ageism의 측정과 구조⁴⁾

한국에서는 본격적으로 노인집단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인식을 측정하는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았고, 노인에 대한 태도, 인식 그리고 차별에 대한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들이 기존 연구들의 것들을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사용되어 왔다. 특히 Palmore(2001)가 개발한 척도를 기본으로 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원영희, 2005; 김옥, 2003). 일본에서는 최근 들어 연령주의에 대한 연구와 측정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주로 Palmore의 논의와 Fraboni의 척도를 활용하고 있다. 原田 謙 등(2004, 2008)은 Fraboni의 척도를 일본어판으로 재구성하면서 문항을 최종적으로 14항목으로 줄여서 활용하였다(Fraboni 척도를 활용하여 3개 하위 요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행하여 비방, 차별, 회피를 하위 요인으로 하는 14개의 단측판을 결정하였다). 이후 杉井潤子(2007a, 2007b)의 연구에서도 Fraboni의 척도가 기본적으로 활용되었다. 앞의 原田 謙 등이 Fraboni 척도 중 최종 단측판을 만드는 중간단계에서 사용하였던 19개 문항을 기초로 활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하위 영역을 5개로 추출하였는데 기피/거절, 멸시, 성가심, 무시, 타인감(他人事) 등으로 나누었다.

이에 한국에서의 연령주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국의 가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535명(회수율 61.4%)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자료수집은 한국종합사회조사(KGSS)의 특별주제모듈 조사로 진행되었고 표본추출방법은 다단계지역확률표집방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1>과 같다.

4) 이 장은 본 연구자의 논문 “연령주의(Ageism) 척도의 개발 및 타당성 연구”(2012, 한국인구학 35(1): 54~75)와 발표문 “한국 Ageism의 측정과 구조”(2012년 인구학회 정기학술회의)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인구통계학적 변인	하위집단	인원(%)
성별	남	688(44.8%)
	여	847(55.2%)
연령	20대	251(16.4%)
	30대	336(21.9%)
	40대	366(23.8%)
	50대	249(16.2%)
	60대	164(10.7%)
	70대 이상	169(11.0%)
결혼여부*	기혼	1029(67.0%)
	미혼	301(19.6%)
	비혼	205(13.4%)
학력**	무학	76(5.0%)
	초등(국민)학교	126(8.2%)
	중학교	116(7.6%)
	고등학교	455(29.6%)
	전문대학	197(12.8%)
	대학교	464(30.2%)
대학원(석사 이상)	95(6.2%)	

* 기혼에 별거 10명을 포함함. 비혼은 사별, 이혼, 동거를 합친 숫자임

**서당(한학)은 제외

노인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연령주의는 노화에 대한 생각, 노인집단에 대한 고정관념 그리고 노인에 대한 차별적 행동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기존 척도 문항들을 검토한 후, Lasher 등(1993)의 노화불안척도(AAS) 20개, Cherry와 Palmore(2008)의 ‘고령자에 대한 평가척도’(ROPE) 20개, Fraboni 등(1993)의 FSA문항 29개를 기초로 한국판 연령주의(Ageism) 척도를 개발하였다.

1차로 사회학과 사회복지학 그리고 노년학 전문가들에게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 가능성을 평가받아 문항을 수정·보완하고,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번역(역번역)을 통해 이해가 분명하지 않은 문항 제거 과정을 통해 44 문항의 예비문항으로 정리하였다. 그리고 44개의 예비문항을 활용하여 18세 이상-50세까지의 성인 177명을 대상으로 파일럿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이 자료를 활용하여 내적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문항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문항을 삭제하면 신뢰도 지수가 올라가는 경우와 요인분석 결과 적재값

이 떨어지는 문항을 정리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 31개의 문항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으며,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에서 ‘그렇지 않다’의 5점 척도로 평가되었다. 이후 2차로 31개 문항에 대한 문항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연령주의 척도의 하위 요인을 확인하고 문항을 보다 축약하기 위해 내적신뢰도와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추출방법은 주성분분석(Principle Component Method)과 직교회전법(Varimax Rotation Method)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령주의 척도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⁵⁾

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낮은 8개의 문항이 삭제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노화에 대한 문항 중 하나인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할 일이 많을 것이다”, “노인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등이 있다. 또한 노인에 대한 차별 경험의 문항 중 기존 연구(Cherry & Palmore, 2008)에서는 긍정적 연령주의 문항으로 구분되었으나 이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의미에 대한 혼란이 제기되었던 문항 등이 내적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⁶⁾ 이것은 기존 연구에서 긍정적 연령주의로 구분되었던 문항들로 서구의 문화적 맥락과는 다른 한국 사회에서는 공경(恭敬)의 문화적 전통이 남아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23개의 문항에 대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하였다. 동일표본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전체 샘플을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이순목, 2000; Raykov and Widaman, 1995). A 집단(n=767)은 탐색적 요인분석에 사용되었고, 집단 B(n= 768)는 확인적 요인분석을 위해 활용되었다.

5) 확인적 요인분석은 이론적 배경 하에서 미리 설정된 요인차원 및 가설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로 사용된다. 즉 요인 모형을 경험자료에 비추어 검증하는 것이다(김계수, 2010).

6) Cherry와 Palmore(2008)의 연구에서는 분명하게 긍정적 연령주의로 구분되었던 문항에 “고령을 이유로 차도를 건너는 것을 도와준 적이 있다(원척도에서는 문을 열어 잡아준 적이 있다), 노인의 나이 때문에 그들과의 대화를 즐긴 적이 있다, 노인에게 그들의 나이에 불구하고 “젊어 보인다”고 말한 적이 있다” 등이 있다. 그런데 이들 문항에 대해서 Cherry와 Palmore도 앞의 긍정적 연령주의로 응답된 문항들이 실제 노인집단에 대한 긍정성에서 나온 결과일 수도 있으나 연령주의의 차원이 아니라 정중하고 배려있는 행동으로 인식되어서 나온 행동일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실제로는 이들 응답자들이 노인(modal older adult)에 대한 매우 고정적인 인식(노인은 신체적으로 약하고, 말하기를 좋아하고, 노화의 분명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매력적일 수 있으므로)을 발현한 것이며 이것은 보다 심도 있는 연령주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다.

두 집단은 성별, 연령별로 편향성 없이 분리되었음을 동질성 평가를 통해 검증되었다(성별: $\chi^2=4.53, p>.05$, 연령대: $\chi^2=1.72, p>.05$).

요인분석 결과 아이겐값(Eigenvalue)이 1이상인 요인이 7개로 나타났다. 모든 문항의 부하량이 0.4이상이었으며, 표본적절성에 대한 검증으로 KMO값을 살펴보았는데 0.76로 나타났으며, 구형성 검정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Chi-square=4215.12, df= 253, p<0.001). 탐색적 요인분석의 결과는 <표2>과 같다.

<표 2>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문항 번호	문항	1	2	3	4	5	6	7
		노화 불안	편견	기피/ 회피	외모 변화	차별 행동	노화 긍정	분리
a2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여전히 대부분의 일을 나 스스로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10	-.03	.11	.08	.07	.85	-.02
a3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나 자신에 대해 좋게 생각하리라 예상한다	.06	.02	.14	.25	.07	.82	.04
a4	나는 거울에서 흰머리를 보게 될 날이 두렵지 않다	.05	.02	.04	.83	-.02	.28	.01
a5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늙어 보이는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14	.07	.04	.87	-.04	.12	.10
a6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	.34	-.10	.27	.47	.24	-.32	-.01
a7	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내 친구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버릴까 봐 두렵다	.73	-.07	-.03	.08	.11	-.10	.06
a8	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진다	.62	.20	-.13	.00	.00	.00	-.11
a9	나이가 들었을 때 내 문제를 다른 누군가가 결정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안하다	.75	.01	.05	-.02	-.05	-.01	.05
a10	나이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봐 걱정이다	.77	.09	.12	.12	-.01	.12	.11
a11	나이가 들었을 때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까봐 두렵다	.70	.11	.07	.14	.04	.24	.06
a16	노인에게 "나이가 너무 많아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있다	-.00	.01	.11	-.02	.71	.07	.07
a17	노인에게 나이에 관한 농담을 한 적이 있다	.08	.08	-.02	.02	.80	.02	.00
a18	노인이 아플 때 "그 나이에는 아픈 게 정상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01	.33	-.10	-.00	.65	.03	.10
a21	노인은 대부분 인색하며, 돈과 재산을 물려 숨겨 놓는다	.06	.68	.10	.07	.20	-.07	.01
a22	노인은 대부분 과거 속에 살고 있다	.12	.69	-.08	-.02	.14	.07	.12
a23	노인은 대부분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기 때문에 짜증난다	.081	.76	.26	-.03	.04	.02	.03
a24	노인은 젊은 사람보다 불평이 많다	.021	.76	.15	.04	-.01	-.02	.03
a25	나는 노인 그룹 행사에 초대받더라도 가고 싶지 않다	.06	.28	.66	-.00	-.03	.04	.01
a26	나는 노인과 만나면, 때때로 눈을 마주치는 것을	.01	.01	.83	.07	.08	.09	.06

	피한다							
a27	노인이 나에게 말 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02	.03	.82	.06	.02	.11	.12
a28	노인들은 따로(별도로 구분되는) 지역 운동시설을 사용하면 좋겠다	.07	.03	.11	.03	.11	-.02	.85
a29	노인들의 주거공간은 따로(별도로 구분되어) 마련되는 것이 좋다	.06	.11	.14	.05	.07	.04	.85
a30	나는 노인과 개인적으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02	.37	.52	.07	-.09	.01	.35
	요인고유근	2.76	2.49	2.38	1.79	1.75	1.72	1.67
	설명변량	12.01	10.82	10.33	7.79	7.59	7.47	7.26
	Cronbach's α	.78	.74	.72	.49	.65	.78	.75

이어서, 집단A를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제시된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7개 요인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분석을 하였다. 이를 위하여 집단 B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연령주의 척도의 요인구성과 패턴을 검증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는 작업이다. 이 과정에서 23개 문항으로 실시한 1차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변수 a6(“나는 나이가 들었을 때 젊게 보이려고 나이를 속일지도 모른다”)과 a8(“나이가 들수록 나의 건강에 대해 걱정이 커진다”)의 표준화된 회귀계수의 적재치가 .48과 .25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몇 가지 적합도 지수가 기준보다 좋지 않았다. 7) 2개 문항에 대해서 통계적 수치에 의한 판단 이외에, 외모 변화에 대한 유보적인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점과 건강에 대한 불안이 모든 연령대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에서 노화에 대한 불안 요인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두 변수를 제외하고 21개 문항으로 다시 모형을 설정하고 2차 적합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인 적합도 지수들이 모두 수용할 만하며, 요인계수 또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는 다음의 <표3>와 같다.

7) $\chi^2/df=3.04$, IFI=0.90, CFI=0.89, RMSEA=0.06

〈표 3〉 연령주의(Ageism)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

	χ^2	df	χ^2/df	IFI	CFI	RMSEA
수용수준			3.0 이하	$\geq .90$	$\geq .90$	$< .08$
측정모형	460.13	168	2.74	.93	.93	.05
판정결과			적합	적합	적합	적합

앞에서 개발된 21개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의 연령주의(Ageism)이 생성되는 요인을 탐색하였다. 성, 연령, 가족관계, 학력, 경제활동, 건강, 지역 등의 속성과 연령규범 및 고령자와의 접촉, 행복도 등의 요인이 연령주의(Ageism)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노년일수록,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황금기연령(best age) 인식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행복감을 더 느낄수록, 고령자와의 접촉이 많을수록 연령주의가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연령주의(Ageism) 회귀분석 결과

	β	(S.E)
연령 (60세 이상)		
18세 - 39세	-.143*	0.053
40세 - 59세	-.149**	0.048
성별(남성)	.064*	0.027
취업(미취업)	-0.002	0.029
학력 (중학교졸업 이하)		
고등학교졸업	0.05	0.045
초대졸이상	-0.003	0.045
거주지 (대도시)		
대도시 주변 및중 소도시	-0.037	0.027
시골 및 외딴지역	-0.019	0.05
배우자(있음)	0.049	0.03
고령자접촉 (없음)		
가끔 교류	-.119***	0.032
직장/학교에서 교류	-.087**	0.044
정기적 교류 및 동거	-.141***	0.035
황금기연령인식	-.056*	0.01
건강상태	-.147***	0.014
행복도	-.197***	0.013
Adjusted R2	0.103	
N(df=15)	1297	

*p<.05.**p<.01.***p<.001.

(2)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Ageism)의 구조와 영향요인의 비교⁸⁾

서구의 기원을 가지는, 고령자를 이해하는 사회적 관점의 하나인 연령주의라고 하는 개념에 근거하여,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고령자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관념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차별이나 억압이 얼마나 구조적인 관계로서 고정화되고 있을 까를 살펴보았다. 각 사회의 연령주의 양상은 그 사회의 고령자의 생활을 대변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고령자 문제의 본질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한국과 일본에 있어 고령자에 관한 인식이나 태도에 대한 사회조사 데이터를 이용해 연령주의 양상의 차이와 영향 요인을 검증하였다.

일본의 데이터는, 2004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 일본 학술 진흥회 과학 연구비 보조금을 받아 실시한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연령 차별(Ageism)의 실태 해명과 고령화 교육의 추진」에 의한 연구 성과⁹⁾를 활용했다. 분석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다음의 <표 5>와 같이 되어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비교 분석을 위해서 분석 대상자의 연령(40세)과 지역을 중심으로 변수를 조정하였고 통제 변수로 사용하는 공통 변수를 선정해 데이터 세트를 구성했다. 덧붙여 40세 이상으로 조사 대상자를 설정한 의도는, 나이듦을 의식하기 시작하는 세대로 생각한 것에 의한 것이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 직업의 유무, 교육 연수, 거주지 규모, 혼인 상황,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 행복감/생활 만족도에 의해서 속성을 파악한 것 외, 고령자와의 교류 경험의 정도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Fraboni 연령주의 척도 11개 항목(5점 scale)을 양국에서 공통으로 활용하여 연령주의가 강할수록 점수가 높아지도록 지표화 하였다(설문문항 11번 역전).

8) 이 장은 본 연구자의 논문 「韓国と日本のエイジズム(Ageism)の構造と影響要因の比較」(2013, 日本研究 56 : 7-24) 의 일부를 참고하였다.

9) 2004-2006년 研究費補助金(基盤研究(C)) 「現代社会における年齢差別(エイジズム)の実態解明と高齢化教育の推進」(課題番号165004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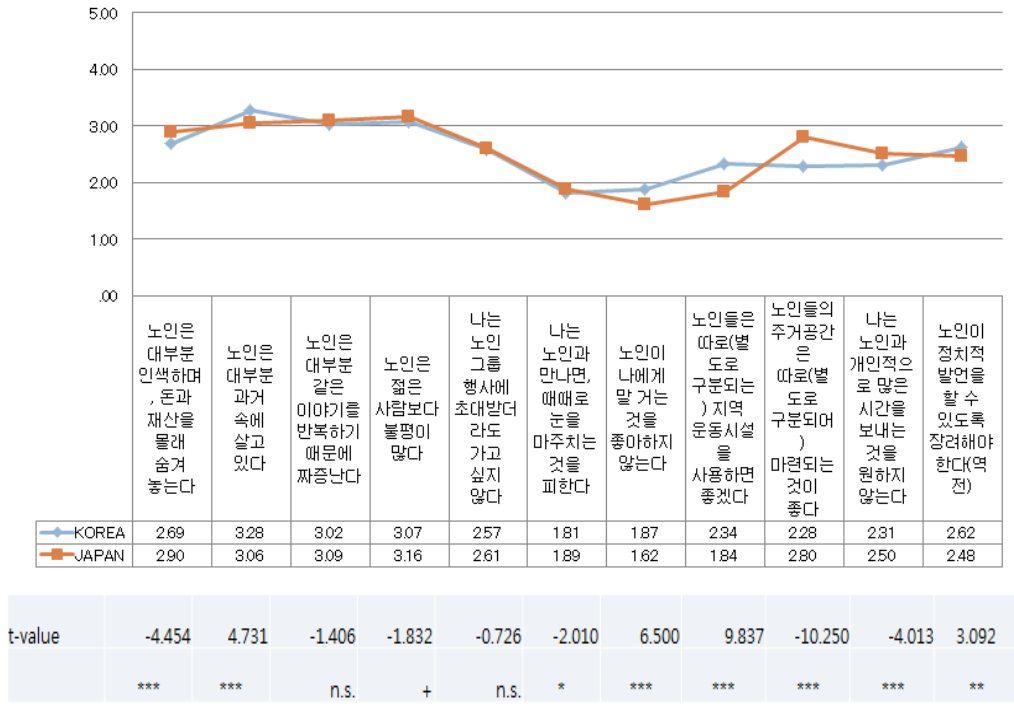
〈표 5〉 분석대상자의 특성 (N(%))

		한국	일본
성별	남성	410(47%)	514(49%)
	여성	456(53%)	590(51%)
연령	평균값	54.14	59.82
직업	유	559(65%)	463(43%)
	무	307(35%)	623(57%)
교육연수	평균값	12.15	12.73
거주지	대도시	261(30%)	324(30%)
	지방중소도시	503(58%)	677(61%)
	농촌	100(12%)	101(9%)
혼인상태	배우자 유	713(82%)	922(84%)
	배우자 무	153(18%)	177(16%)
가족원수	평균값	2.93	3.25
건강상태1)	평균값	3.33	2.97
주관적 경제상태2)	평균값	2.85	2.45
행복감/생활만족감3)	평균값	4.78	2.92
고령자와의 교류경험	거의교류없음	185(21.4%)	59(5.6%)
	지역에서 인사 정도함	271(31.3%)	92(8.7%)
	자원봉사나모임등에서만 남	108(12.5%)	194(18.3%)
	직장에서 교류	83(9.6%)	131(12.3%)
	일상적 동거	219(25.3%)	586(55.2%)
N		866	1104

注1 : 건강상태(일본:4점scale, 한국:5점scale), 2:주관적경제상태(일본:4점scale, 한국:5점scale), 3:행복감/생활만족감(일본:4점scale, 한국:7점scale). 직접적으로 평균치의 비교는 할 수 없다.

Fraboni의 연령주의 문항의 집계 결과 및 양국의 비교를 t검정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 〈그림 1〉이다. 검증 결과, 11개 항목 중 7항목에 대해 유의 수준 5% 이하의 통계적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전체적인 경향에 있어서는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 양상이 유사하지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난 항목을 중심으로 보면, 일본은 고령자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을 모으고 있고, 고령자와 눈을 마주치기를 피하고, 가능한 함께 살고 싶지 않고, 장시간 보내고 싶지 않다고 하는 의식이 한국보다 강하다. 한편, 한국은 일본보다 고령자는 과거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말을 건네는 것을 싫어하며, 지역의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을 꺼려하며, 정치적 발언을 하기를 바라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일본에서는 고령자와의 접촉이나 장시간의 공유, 동거 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개인생활 속에서 배제하는 의식이 강하고, 한국에서는 과거의 존재로서 간주하는 것과 동시에 고령자를 사회

생활 속에서 배제하고 싶다고 하는 의식이 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은 고령자를 개인으로 이해하는지, 집단으로서 이해하고 있는지의 차이로부터 연유한 것은 아닌지 생각할 수 있다.



〈그림 1〉 한국과 일본의 연령주의(Ageism) 11문항 평균비교(t-test)

한국과 일본을 각각 연령주의 문항 합계점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설정하여 연령주의의 생성과 관계되는 영향 요인의 동질성과 이질성을 검토한다. 한국의 연령주의 합계값은 통계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27.90, SD6. 28), 일본(27.92, SD5. 64), 가 되고 있다. α 계수는, 한국은 0. 737(n=864), 일본은 0. 761(n=1066)이다. $t(1753)=. 092, n.s.$). 연령주의의 실태는 전반적으로 비슷하다는 것을 전제로 다음의 검증과 논의를 실시했다.

한국의 결과를 보면, 연령, 행복도, 고령자와의 교류(모임이나 자원봉사 활동,

직장에서의 교제, 일상적 동거) 등에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났다. 고령일수록 연령주의가 강하고, 행복도가 낮을수록 연령주의가 강하다. 고령자와의 교류에서는 정기적으로 고령자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 비해 전혀 접촉이 없는 경우에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일본의 결과는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성별과 연령, 교육 연수, 거주지, 건강 상태, 주관적 경제 상태, 생활만족감, 고령자와의 교류 등에서 의미 있는 영향이 나타났다. 남성이, 고령일수록, 고학력의 경우에, 도시와 시골 거주가 아닌 경우에 연령주의가 강하다. 그리고 건강상태가 안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생활 만족감이 낮은 경우에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고령자와의 교류에서는 한국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고령자와의 접촉이 있는 경우에 비해 전혀 접촉이 없는 경우에 연령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다. 이것은 고령자와의 교류가 없으면 고령자에게의 차별 의식이나 편견이 생길 수 있음을 짐작하게 한다.

〈표 6〉 韓国と日本のエイジズムの要因分析結果

		한국(β)	일본(β)
성별		-.707(-.056)	1.695(.150)***
연령		.288(.099)*	.052(.109)**
직업더미		.254(.019)	-.583(-.051)
교육연수		.005(.003)	.145(.060)+
거주지	중소도시	-.318(-.025)	-.451(-.039)
	농촌	-.115(-.006)	-1.760(-.087)*
혼인상태더미		-.055(-.003)	-.163(-.011)
가족원수		.185(.037)	.116(.031)
건강상태		-.328(-.055)	-.772(-.089)*
주관적 경제상태		.196(.036)	.685(.082)*
행복감/생활만족감		-.492(-.084)*	-1.234(-.149)***
고령자와의 교류경험	지역에서 인사 정도함	-1.113(-.084)	-1.209(-.059)
	자원봉사나모임등에서 만남	-2.334(-.123)*	-3.104(-.213)***
	직장에서 교류	-1.665(-.078)*	-2.538(-.144)**
	일상적 동거	-2.719(-.188)***	-2.497(-.219)**
(定數)		31.095	29.135
R2乘		0.043	0.09
調整済みR2乘		0.026	0.075
p<.001***p<.01**p<.05*			

국제 비교에는 문화 특성을 얼마나 이해하고 반영하느냐가 큰 과제이므로 이번 분석에서는 양국의 데이터를 무리하게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같은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차이를 드러내려고 시도했다. 연령주의의 양상은 대체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었으나, 한국과 일본에 있어서 연령주의가 생성되는 영향요인의 차이를 드러냄으로써 연령주의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이번 기초 작업을 통해 양적 자료를 통해 전체 경향을 파악해 비교 검토했지만, 향후에는 각 사회의 연령주의의 구체적 맥락과 개별의 사례 등 질적 연구로 심화할 필요성이 있다.

5. 결론

노인 자신의 개인적인 노화과정과는 별도로, 누가 노인이며, 아울러 그들의 노화(aging)와 관련된 지위와 역할이 그 사회에 의해 재규정 될 때, 노인문제는 사회 문제(social problem)로 등장하게 된다(Matcha, 1997). 노인집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부정적)변화는 노인집단의 생활세계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사회 성원과의 관계에, 노인 스스로의 의식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노인이 소외되고 부당하게 대우 받는 차별의 경험을 갖게 하며, 궁극적으로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과 세대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령주의를 통해 노년을 해석하려는 시도들은 노년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황, 즉 생활세계의 각 측면과 관련하여 유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노인인구의 증가는 퇴직, 수입보장, 의료보호에 대한 관심을 가져오고 정부의 예산부족에 따라 노인에 대한 제도들이 연령주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부정적인 연령주의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노인들의 자존감의 상실, 신체적·정신적 기능의 상실 등 개인적 비용, 강제퇴직제도로 인한 수많은 노인들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것 등의 경제적 비용, 노인들의 지혜와 사회적 지원, 그리고 문화적 자원을 무시하는 것 등의 사회·문화적 비용 등을 연령주의를 통해 바라봄으로써 현재 노년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높일 수 있다(김주현, 2009).

앞에서 소개된 일련의 연구들은 유교적이고 가부장적 가족 체계가 강하였고, 산업화와 근대화의 영향을 질풍처럼 경험하였던 한국 사회에서 고령집단의 이해를 위해서 연령주의의 논의를 주목한 시도와 결과물이다. 한국사회 노인들은 사회발전을 위해, 또 자녀를 위해 노동하고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한 세대이다. 그러나 일생 동안 이루어진 급격한 사회·경제·문화적 변화로 미래 세대를 위하여 에너지와 자원을 투자함으로써 그들이 기대했던 안락하고 존경받는 노년기는 현실화되고 있지 못하다. 한국 노년의 이러한 기대와 현실의 차이는 연령주의가 드러나는 지점일 수 있다.

연령주의는 고령자의 생활 세계의 다양한 측면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세대와의 관계는, 고령자 스스로의 의식과 생애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회가 많은 영역에서 고령자가 소외되어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하는 차별은 궁극적으로 고령자의 심리적 안녕감과 세대 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인구 고령화가 가속하는 가운데, 각 사회의 연령주의의 양상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논의가 더욱 더 활발하게 되리라 예측된다. 고령사회문제를 조명하는 관점으로서 연령주의에 대한 조명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고령자 집단의 위치와 상황을 파악하고 나아가서는 고령자 정책을 보다 확고한 것으로 검토해 가는 것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고령자 지원과 관계되는 실천 현장에서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태도에 대해서 재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참고문헌

- 김계수 (2010) 《AMOS 18.0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 서울: 한나래.
- 김미숙 (2003) 《고령화사회의 사회경제적 문제와 정책대응방안: OECD 국가의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김옥 (2003) “노인차별의 실태 및 관련요인에 관한 탐색적 조사연구” 《한국노년학》 23(2): 21-35.
- 김주현 (2007) 노인 생산적 활동의 복합성과 생활만족도, 《한국인구학》, 30(3): 57-81.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 역사》 82: 361-391.
- 노공균, 조소영, 신동숙, 이태훈, (1991) “Determinants of the Socio-economic and Emotional Status of the Elderly in Korea”, 《한국인구학》, 14(2): 45-70.
- 박경숙 (2004) “연령주의 사회와 법” 《사회적 차별과 법의 지배》 서울대학교 BK21 법학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 2차 학술대회자료집.
- 원영희 (2005) “노인차별 피해경험이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 21: 310-339.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교육과학사.
- 이윤경 (2007) 비노인층이 갖는 노인 이미지 연구, 《한국인구학》, 30(2): 1-22.
- 정경희 (2004) “인구고령화와 연령통합 사회” 《사회연구》 1: 11-26.
- 정경희 · 한경혜 · 김정석 · 임정기 (2006) 《노인문화의 현황과 정책적 함의: ‘성공적 노화’ 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기원 (2001) 노부모와 별거 성인자녀와의 가족유대: 정서적 지원에 대한 교환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24(1): 123-148.
- 최해경 (2004) 수발상황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 《한국인구학》, 27(1): 31-55.
- AARP Retrieved from <http://www.aarp.org/about-aarp/>
- BBC Research, 2009, Retrieved from <http://www.bccresearch.com/report/anti-aging-products-services-hlc060a.html>
- Binstock, R. H. (2005). Old-age policies, politics, and ageism. *Generations*, 73-78.
- Binstock, R. H., & Fishman, J. R. (2010). Social dimensions of anti-ageing science and medicine. In D. Dannefer, & C. Phillipson (Eds.), *The sage handbook of social gerontology* (pp.472-482),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 Binstock, R. H., Fishman, J. R., & Johnson, T. E. (2006). Anti-aging medicine and science:

- Social implications. In R. H. Binstock & L. K. George (Eds.), *Handbook of aging and the social sciences* (6thed.,pp.436-455), Burlington:Academicpress.
- Bodily, C. (1991). "I have no opinions. I'm 73 years old." *Rethinking ageism. Journal of Aging Studies*, 5(3):245 - 264.
- Business Communications Company, Inc.. 2005, *Antiaging Products and Services* (Norwalk, CT: Business Communications Company,Inc.,)
- Butler, Robert (1987) *Ageism, The Encyclopdia of Aging* New York: Springer : 22-23.
- Bytheway. B. (1995) *Ageism*, Philadelphia: Open University Press.
- Cherry, Katie, and Erdman Palmore (2008) "Relating to Older People Evaluation(ROPE): A Measure of Self-Reported Ageism" *Educational Gerontology* 34: 849-861.
- Elder Justice Coalition (EJC) (2011) http://www.naela.org/App_Themes/Public/PDF/Advocacy%20Tab/Other%20Advocacy/ElderJustice_Background.pdf
- Fraboni, Maryann, Robert Saltstone, and Susan Hughes (1993) "The Fraboni Scale of Ageism(FSA): An Attempt at a More Precise Measure of Ageism" *Canadian Journal of Aging* 9(1): 56-66.
- Dale, C. V. (2005). *Disparate impact analysis and the Age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Act: the Supreme court decision in Smith v. City of Jackson*. CRS report for Congress, The library of Congress.
- Glanda Law (1995) "Understanding Ageism: Lessons from Feminism and Postmodernism" *The Gerontologist* 35: 112-118.
- Gray Panthers (2009). Retrieved from http://graypanthers.org/pdfs/Gray_Panthers_Issues.pdf
- Haber, C. (2001-2002). "Anti-aging: why now? A histor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ntemporary enthusiasm," *Generations*, 25, 9-14.
- Hareven, Tamara (1995) *Changing images of aging and the social construction of the life course*. In: Featherstone, Mike; Wernick, Andrew (Org.). *Images of aging: cultural representations of later life*. London: Routledge. p.119-135.
- Hummert ML, Garstka TA, Shaner JL, Strahm S.(1994) Stereotypes of the elderly held by young, middle-aged, and elderly adults. *Journals of Gerontology* 49: 240 - 249.
- Jackson, W.A. (1998) *The Political economy of population aging UK*: Edward Elgar.
- Komatsu, Hideo. 2002. "Aging and Gender in Modem Society." *Women's Studies Forum* 16: 23-42.
- Lasher, Kathleen P., Patricia J. Faulkender. (1993) "Measurement of Aging Anxiety:

- Development of the Anxiety about Aging Scale”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Aging and Human Development* 37(4): 247-259.
- LCAO Retrieved from http://www.lcao.org/our_mission.htm Lupien, S. J., & Wan, N. (2004). Successful ageing: From cell to self.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B: Biological Sciences*, 359(1449), 1413-1426.
- Macnicol, J. (2006). *Age discrimination: A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analysi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atcha (1997) *The Sociology of Aging: A Social Problems Perspective* Boston: Allyn and Bacon.
- Moody, H. R. (2001). Productive aging and the ideology of old age. In N. Morrow- Howell, J. Hinterlong & M.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pp. 175-196).
- Nelson, Todd D. 2009. *Handbook of Prejudice, Stereotyping, and Discrimination*. New York: Taylor and Francis Group.
- Palmore, Erdman. B.(1999) *Ageism: Negative and Positive*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Raykov, T. and Widaman, K.F. (1995) “Issues in appli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ear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2(4): 289-318.
- The International Longevity Center (ILC). Retrieved from http://www.ilc-alliance.org/index.php/issues/issues_posts/C27
- Torres-Gil, F., & Putnam, M. (2004). The politics of aging with a disability: Health care policy and the shaping of a public agenda. In B. Kemp & L. Mosqueda (Eds.), *Aging with disability* (pp. 262 - 279).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杉井潤子 (2007a) “なぜ高齢者を差別し虐待するのか” 《老年社会科学》 28(4); 545-552.
- 杉井潤子(2007b) “エイジズム構造と生成要因” 《現代の社会病理》 22: 155-170.
- 原田 謙 (2004) 日本語版 Fraboni エイジズム尺度(FSA)短縮版の作成 《老年社会科学》 26(3) : 308-319.
- 原田 謙, 衫澤秀博, 柴田博 (2008) 都市部の若年男性におけるエイジズムに関連する要因 《老年社会科学》 29(4) : 485-491.
- 原田 謙 (2011) 「エイジズム研究の動向と課題」 『老年社会科学』 33(1): 74-81.
- 柴田博. (1996) . 『高齢者のQuality of life (QOL) 』, 日本公衛誌, 11, 941-945.
- 森幹郎 (1978) 老人問題とは何か、ミネルヴァ書房, 22-23.
- 副田義也, (1997). “overview 老年社会学の展望と批判”, 井上俊他 編 『成熟と老いの社会学』 岩

波書店、197-214.

大熊 一夫.(1988) 루포 老人病棟, 朝日新聞社

辻正二, (2000), 『高齢者ラベリングの社会学—老人差別の調査研究—』 恒星社厚生閣.

Japan NGO Council on Ageing (JANCA), <http://www.janca.gr.jp/>

全老連, <http://www.zenrouren.com/>

内閣府, (2008), <http://www8.cao.go.jp/kourei/kenkou.html>

内閣府,(2009),高齢社会対策の実施の状況,

<http://www8.cao.go.jp/kourei/whitepaper/w-2009/gaiyou/pdf>

